

2024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 현장체험학습 유형별 운영 안내 |

★ 아래의 순서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유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1일형 현장체험학습	비고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 활동				
		소규모 100명 미만	대규모 100명 이상	국외 규모무관					
1	기본계획수립	○	○	○	○	○	학교교육계획 (또는 교육과정)에 반영		
	미참가 학생 지도계획	○	○	○	○	○			
	인솔자	학급당 2명 필요(단, 인솔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받은 경우 학급당 1명 인솔 가능) - 학급당 1명 인솔시 인솔자는 교사만 가능					학급으로 편성되지 않는 집단의 경우 25명 기준		
	안전요원	50명당 1명 의무 배치			수련원 청소년 지도사 50명당 1명 의무 배치	50명당 1명 배치 권장	안전요원 연수 이수 교직원은 인솔자와 안전요원 겸임 가능		
2	학부모동의	여부	○	○	○	자율			
	비율	자율 설정	자율 설정	90% 이상	자율 설정	.	활성화위원회에서 동의율 설정		
3	학생선호도조사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4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구성 · 운영	○	○	○	○	○	1일형은 답사 실시 여부 심의 시에만 운영		
		학교장이 활성화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	○	○	○			
6	현장 답사	1회 이상 필수				1회 (생략가능)*	답사 시기 학교 자율		
7	사전 정보입력	○	○	○	○	자율	경기교육모아 사전/사후 정보방 입력		
8	교육지원청 사전 컨설팅	필요시 요청	○ **	○	필요시 요청	.			
9	사전 안전교육	○	○	○	○	○			
10	학생 및 인솔자 보험 가입	○	○	○	○	자율 (고위험 활동 포함시 가입 필수)	여행자 안심공제 또는 여행자보험 가입		
11	사후 결과입력	○	○	○	○	자율	경기교육모아 사전 정보방 자료 수정 입력		

* 학교장이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전 답사 생략 가능(숙박형 및 고위험활동 포함 현장체험학습은 생략 불가)

- 사전 답사를 생략하게 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건물배치도 확인(비상구 확인 등), 비상대피 요령 등 사전 안전교육은 계획 수립하여 반드시 실시

** 소규모로 나눠서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숙소에서만 대규모로 운영할 경우 사전 컨설팅 대상은 아니나 숙소에서의 대규모 활동(레크리에이션 등) 계획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 컨설팅 대상임.

| 용어의 정의 및 현장체험학습의 구분 |

용어의 정의

“현장체험학습”이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1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현장답사”란?

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인솔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전교육”이란?

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화재, 풍수해 등의 모든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소규모 현장체험학습”이란?

운영시 3학급 이하를 선택하거나 또는 참여 학생 수 100명 미만의 규모를 선택하여 운영함을 말한다.(4학급 이상 그리고 100명 이상 운영시는 대규모)

(예시 : 5학급 98명-소규모, 3학급 112명-소규모, 4학급 110명-대규모)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란?(이하 “활성화위원회”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현장체험학습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대하여 전문적·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를 말한다.

※ 다만, 학교장이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함.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역할

- 숙박형 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기본계획 검토 및 자문
 - * 대상이 전교생 또는 학년 전체인 경우 숙박형 체험학습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동의율 결정 및 동의율 조사 결과에 따른 실시 여부 결정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시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답사단 구성 및 시행
 - * 학부모 위원 불참 시 활성화위원회의 타 위원에게 위임 가능
-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답사를 생략할 경우에만 안전대책 여부를 심의함.
(학교장이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경우)
- 계약 관련 경쟁 입찰 진행시 제안서 평가

현장체험학습의 구분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 자연, 문화 등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기 위해 여러 활동 장소를 오가며 실시하는 숙박형 단체 활동
- 수련활동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함양하기 위해 수련시설에서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숙박형 단체 활동
- 기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제외한 활동으로 일정 기간 숙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1일형 현장체험학습

- 하루(1일) 동안의 교육과정 운영 전체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숙박 체험활동

학생 일부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

- ▶ 일부 학생이 참여하는 현장체험활동의 경우(예: 학생자치 캠프, △△탐험대 등)
- ▶ 전일제가 아닌 체험활동의 경우(하루 일과 중 일부 시간만 체험학습 실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과 매뉴얼의 의무 적용 대상 아님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대책을 포함한 학교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2024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CONTENTS

제1장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개요

I.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1.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근거	3
2.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목적	3
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기본 방향	3
4.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4
5.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11
6. 현장체험학습 관련 반부패 청렴 계획	12
7. 본 매뉴얼의 적용 범위	12

제2장 | 현장체험학습별 안전조치 안내

I.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절차(예시)	16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 추진 절차(예시)	18

II. 1일형 현장체험학습

1. 1일형 현장체험학습 절차(예시)	38
2. 1일형 현장체험학습 세부 추진 절차(예시)	40

III. 현장답사 안전점검 항목표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현장답사 안전점검 항목표(예시)	53
2. 1일형 현장체험학습 현장답사 안전점검 항목표(예시)	55

IV. 자체 점검표 및 안전 컨설팅 방안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자체점검표	56
2. 1일형 현장체험학습 자체점검표	58
3. 국외 현장체험학습 자체점검표	60
4. 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컨설팅 방안	64

제3장 | 부록

I.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	68
2. 현장체험학습 관련 감사 사례	74

II.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및 신고제

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안내	77
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 안내	83
3. 체험학습 안심 점검 서비스 안내	85
4. 청소년단체 현황	88

III. 안전한 체험학습 Q&A

1. 숙박형 체험학습	89
2. 1일형 체험학습	93
3. 기타	95

IV. 각종 서식

〈서식 1〉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구성 현황(예시)	100
〈서식 2-1〉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형) 결과 설문(참가 학생용)	101
〈서식 2-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형) 결과 설문(인솔 교원용)	102
〈서식 3-1〉 수련활동형 결과 설문(참가 학생용)	103
〈서식 3-2〉 수련활동형 결과 설문(인솔 교원용)	104
〈서식 4〉 체험학습 불참자 환불 및 정산보고(예시)	105
〈서식 5〉 국외 현장체험학습 신고서	106
〈서식 6〉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07
〈서식 7〉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	108
〈서식 8〉 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109
〈서식 9〉 현장체험학습 사안 보고서	110
〈서식 10〉 숙박형 체험학습 수송버스 호송 협조(음주측정 등) 요청서	111
〈서식 11〉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신청서	112
〈서식 1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세부계획 목차(예시)	113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I.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1.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근거
2.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목적
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기본 방향
4.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5.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6. 현장체험학습 관련 반부패 청렴 계획
7. 본 매뉴얼의 적용 범위

2024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01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개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개요

○ 목적 및 기본방향

목적

-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기본 방향

- ▶ 모든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은 안전대책을 강화하여 운영
- ▶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 형태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 현장체험학습 운영 공통 준수 사항

계획수립

- ▶ 안전 대책을 포함한 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현장답사

- ▶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체험 일정 및 코스에 따라 현장답사 실시

시설이용

- ▶ 시설 이용시 허가 · 등록된 시설 이용

안전교육

- ▶ 이동 경로별 교사 연수, 학생 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의무
(응급처치 요령, 안전 지도 요령, 안전사고 및 재난시 비상탈출 방법 등)
- ▶ 이동 수단별 사전 안전교육(학생, 교사 대상) : 선박·항공·기차 등 포함
- ▶ 숙소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교육 실시

비상 연락망 구축

-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비상연락체계 가동
 -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 · 학부모 및 인솔자 비상연락처 확보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 시 SNS(문자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연락
 - 사안 발생 즉시 구조 신고 및 교육지원청에 피해 상황 보고

인솔자 확보 및 임장지도

- ▶ 현장체험학습 형태에 맞는 인솔자 확보 운영
- ▶ 인솔자의 현장 임장지도 의무

인증 프로그램

- ▶ 위탁 운영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인증프로그램' 이용

보험확인

- ▶ 학생·인솔자 보험 가입 결정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I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1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근거

- 초 · 중등 교육법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목적

- ① 안전이 뒷받침된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한다.
- ②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기본 방향

- ①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위해 안전 대책을 강화한 소규모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한다.
- ② 현장체험학습은 관련 법규 및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부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소, 프로그램 등을 선정·운영한다.
- ④ 각급 학교는 실시 계획을 학교교육계획(또는 학교교육과정)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 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 ⑤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건강과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의 현장체험학습은 금지한다.
- ⑥ 현장체험학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험학습 과정을 경기교육모아 [‘현장체험학습 사전/사후 정보방’](#)에 공개한다.(숙박형 의무)
- ⑦ 수익자 부담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활동 내용, 부담 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한 후 학부모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받아 추진한다.

4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 ①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은 도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기본계획서의 안전 계획을 우선으로 적용하나 방침이 없을 경우 본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의 책임하에 안전 대책을 확보한 후 학교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별도 계획이 시행되는 유치원, 특수학교(급), 체육활동(생존수영, 해외훈련 등) 관련 계획은 각 부서의 자체 안전 계획 및 매뉴얼이 우선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시행할 것

- ② 각급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
 - ▶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중심의 교육활동 계획
 - ▶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 ▶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등 특정지역 지양
 - ▶ 학생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학생 안전대책 방안
 -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방안
 - ▶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교육적 필요와 학교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대규모로 운영할 수 있다.
(단, 대규모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필요)

- ③ 모든 현장체험학습은 소규모(형태*) 체험학습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 단 교육적 필요와 학교 여건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안전대책을 확보하여 대규모로 운영 가능하다.

* 소규모 형태: 3학급 이하 또는 참여 학생 수 100명 미만 단위 운영

가.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생 주도적 기획·운영 및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한 소규모 형태의 현장체험 학습을 추진한다.

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시 사전 대중교통 예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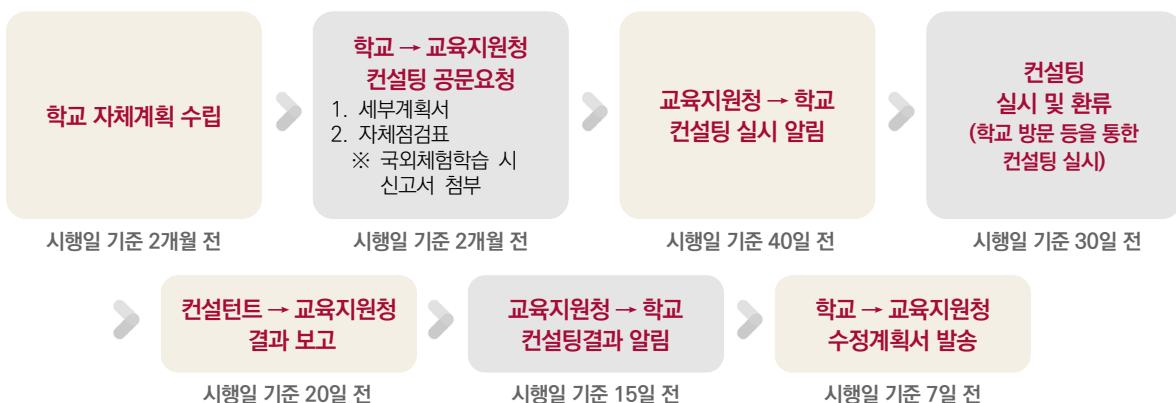
다.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대규모 수련활동 및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세부계획 및 자체 점검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며 **컨설팅 대상인 경우 세부 일정을 협의한다.**

※ 주제별체험학습의 경우 소규모로 나눠서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숙소에서만 대규모로 운영할 경우 안전요원 확보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한 경우 컨설팅 대상은 아니나 숙소에서 대규모 활동(레크레이션 등)이 계획된 경우 교육지원청 컨설팅 대상임.

| 세부계획서와 자체점검표 제출 대상 및 컨설팅 대상 구분 |

체험 구분	규모	소규모	대규모
1일형 체험학습	서류제출 ×, 컨설팅 ×	서류제출 ×, 컨설팅 ×	
수련활동	서류제출 ×, 컨설팅 ×	서류제출 ○, 컨설팅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서류제출 ×, 컨설팅 ×	서류제출 ○, 컨설팅 ○	
국외 체험학습	서류제출 ○, 컨설팅 ○	서류제출 ○, 컨설팅 ○	

라. 컨설팅 절차(예시)



④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적정한 인솔자와 안전요원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가. 학급당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급당 인솔자 1명이 인솔할 수 있다. 학급당 인솔자가 1명의 경우 반드시 교사가 인솔한다.

* 학급이 아닌 집단 편성인 경우 25명 기준

※ 인솔자는 인솔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포함하는 총 인원수임

나.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시 교육지원청 컨설팅이 의무 사항이며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단, 수련활동의 경우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 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안전요원 배치를 대신할 수 있다.

* 1일형 체험학습은 권장.

⑤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로서 위원장(당연직 교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다만, 학교장이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위원회의 모든 역할을 해야 하므로 충분한 숙고 및 의견 수렴 후 대체 여부 결정)

나. 위원의 구성과 운영 방법은 학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이전에 개최한다.



동의율 주의사항

- 숙박형 체험시 활동 내용, 부담 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한 후 학생·학부모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
- 과도한 동의율 설정으로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이 위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동의율은 학교, 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학습에만 해당됨
 - 동의여부 조사 시 활성화위원회에서 정한 동의율을 안내하며, 동의율 확보 미달 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취소가 확정된 경우 반드시 그 이유와 경과 안내가 필요함)

6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

- 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중심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실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계약을 위한 업체 우선 순위 결정에 대한 사항
- 수익자부담경비·학교자체 예산 등으로 실시하는 학교, 학년 단위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나,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참고]

7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고하여 <계약 연기 및 취소 등 변경요건> 관련 사항을 특수조건에 포함

8 반드시 허가·등록된 시설을 이용한다.

- 가. 숙박시설의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 단,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이용 시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 필요(최근 1년 이내)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안내

- 학교를 대신하여 지자체에서 숙박시설 및 음식점의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의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 시행 지자체: 경주, 제주도, 전북, 순천, 강릉 등(신청은 [참고자료]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 나. 수련활동은 허가등록된 수련시설 및 시설 또는 시·도 및 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실시한다.
-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다. 수련활동 운영 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서 종합평가 결과 및 인증·신고 여부 확인

| 시설안전점검 제외 대상 |

- ▶ 여성가족부 종합평가에서 '적정' 이상을 받은 수련시설
 - 종합평가 결과는 청소년활동정보 서비스(www.youth.go.kr)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며 실시간 확인할 것, 이 때도 반드시 인증프로그램만 운영할 것
- ▶ 공공수련시설 및 기타
 - 경기도학생교육원 및 소속 6개 야영장(포천, 연천, 여주, 양평, 용인, 김포)
 - 여성가족부 산하 국립수련시설
 -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http://www.nyc.or.kr>)
 -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http://www.pnyc.or.kr>)
 - *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http://www.nysc.or.kr>)
 - *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타(<http://www.nymc.or.kr>)
 - *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타(<http://www.nyac.or.kr>)
 - 타 부처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청소년활동시설
 - *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립공원 야영장
 - *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 야영장
 - * 산림청 : 임간수련장(자연휴양림)
 - * 소방방재청 : 중앙119구조단
 - *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및 소속 지역교육청 소유 공공수련시설 및 야영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

- ▶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 나. 청소년수련원
 - 다. 청소년문화의집
 - 라. 청소년특화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 바. 유스호스텔*
- ▶ 청소년 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 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 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만 이용 가능

⑨ 학생·인솔자 여행자보험은 숙박형 또는 고위험 활동 포함 시 의무로 가입하여야 한다.

- 가. 의무: 숙박형과 고위험 활동[수상, 항공, 산악, 장기 도보 등]이 포함된 1일형 현장체험학습
- 나. 가)항 이외의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 가입

⑩ 현장답사는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1회 이상 실시한다.

- 가. 숙박형은 1회 이상 의무이며 활성화위원회 학부모 위원 필수 참가
 - 현장답사 시 학부모위원이 불참할 경우 활성화위원회의 타 위원 또는 위임받은 학부모 대리 참석 가능. 학생의 현장 답사 참가 권장
- 나. 1일형은 학교장이 안전대책 등이 확보되었다고 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현장답사 실시 여부 결정 가능(생략 가능[고위험 활동은 생략 불가])

⑪ 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한다.

- 가. 수련 시설 및 위탁업체에 명단과 보호,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통보하여 안전지도 대책 수립
- 나. 지체부자유학생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과 휠체어 이동 동선 확인

⑫ 미참가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미참가 학생은 「저소득층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하여 가급적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



미참가 학생관리 주의사항

- 미참가 학생에 대한 일률적인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 처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참가학생에 대해서만 내신 성적을 반영하거나 교내상 수여 등 미참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의

13 인솔자 안전연수 및 학생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가. 학교장은 인솔자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현장 임장지도 의무,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나.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차량 이용, 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 ▶ 교통수단별 안전교육실시(선박, 항공기, 기차) 기타 안전사고 예방 교육, 공중시설 이용 예절
- ▶ 숙소 등 체험시설 상황발생 대비 행동요령(대피로 확인 등) 교육
- ▶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교육
-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유해 물품을 절대 휴대하지 않도록 교육
-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안전교육 실시(여행자 보험가입 적극 권장)

-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학습자료, 현장체험학습 안전길라잡이, 청소년용 안전교육 가이드북**](#)
(청소년활동안전센터) 등 참고·활용

다.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적합한 학생 안전교육 실시

- 1) 이동 장소마다 참여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되는 학생이 없는지 확인
- 2) 특히, 선박·항공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 탈출 방법 교육 철저
[선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7항]

3) 업체의 안전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솔자는 이행 요구

14 식중독 등 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가. 학교장은 필요시 사전에 관할 시·군·구(안전 및 급식위생 담당 부서)에 실시 기간, 장소(급식 장소 등)를 포함한 일정을 통보하고 위생·안전 점검 결과 조회 공문 요청

나.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소형 일반음식점 이용으로 인한 해당 시·군·구 위생 점검이 어려운 경우, 철저한 현장 확인 후 섭취하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모범음식점 등 이용]

다.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

라. 설사 등 유사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시 치료 조치를 한 후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15 학생수송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가. 전세버스 계약시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차량 계약

-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3(영상기록 장치의 설치 등)

나. 운수회사로부터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의 ‘이상없음’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추가 확인

- 운전자 적격 여부는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도 확인 가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의2(운전 자격증명의 게시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16조 2항 2호 및 3호(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 다. 계약서(배차 통보서)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 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 라. 학교장은 운수회사 담당자·계약관련자·인솔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차량 점검 및 운전자 안전 운전 당부
- 마. 운전자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 실시 요청
 - 유사시 차량 비상탈출법, 안전벨트 착용,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 바. 대열운행 예방을 위해 시간차를 둔 순차적 출발과 안전거리 항시 확보, 과속 운행 예방을 위해 중간 집결 지양하여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
- 사. 교사는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확인, 휴게소 안전교육 실시, 운전자에 대한 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끼어들기 금지 등 안전 운전 요청 및 확인
- 아. 학생수송차량 입찰시 차령 제한 자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별표 2]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16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다.

- 가. 관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시행일 2019. 2. 15.) 및 도로교통법제159조(양벌규정)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외

- 나. 운송사업자의 음주감지 결과 확인서 미제출시 학교자체 음주감지 실시
 - 학교 자체 음주 측정 시를 대비하여 학교내 업무 분장으로 명시할 것을 권장
- 다. 운전자의 음주 확인 즉시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시 학교는 112 신고 및 운전자 교체
- 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당일을 포함한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 운행 전 음주 감지 실시



계약특수조건

-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제출 등에 대한 내용 명시
-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할 것 명시

17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한다.

18 체험지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19 인솔자는 입장지도를 의무로 한다.

- 인솔자는 교육활동 현장에서 교육내용·안전문제·학생호응도 등을 관찰하고, 안전사고 등 응급 상황에 대응 (위탁교육 중 인솔자는 교육 현장 무단이탈 금지)

20 경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집행·정산한다.

- 가. 현지에서 직접 집행해야 할 경비는 임시 출납원을 임명하여 집행
 - 경기도공립학교 회계규칙 제5장 지출 제39조(임시출납원의 임명) 참고
- 나. 수익자 부담 경비가 포함된 현장체험학습은 종료 후 10일 이내(토·일, 공휴일 포함)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 내역 공개

※ 인솔자 여비(교통비, 식비, 일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인솔 교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활동 실시 전 시간외근무 명령을 득한 자에 한하여 지급

- 참고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9호(2018.2.1.)]」

21 현장체험학습 실시 후,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가. 학생·교사 대상의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후 다음 연도 운영계획 자료로 적극 활용
- 나. 모든 숙박형 체험학습은 경기교육모아 사이트의 '[사전/사후 정보방](#)' 탭에서 사전 정보 및 사후 결과 입력
 - ※ 경기교육모아 사이트 이용 안내
 - 회원 가입 및 EPKI 로그인 후 '사전'입력 가능
 - '사후'입력 및 수정은 '사전'입력한 내용에서 가능
 - 사후 내용(1인당 경비, 만족도) 입력 후 수정 저장 시 '사전'이 '사후'로 바뀜

22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자제한다.

- 가. 부득이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현지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나. 고액 경비 및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체험학습 (동학년 국내·외 분리 체험학습 등) 지양
- 다. 적정 안전요원 배치 및 인솔자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이수 적극 권장

| 국외 현장체험학습 준수 사항 |

- 1)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육지원청 컨설팅을 실시하고, 참여 인원수에 관계없이 세부계획서(국외 현장체험학습 신고서 포함) 및 자체점검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컨설팅 환류 후 실시한다.
 - 2) 현장답사는 1회 이상 실제 인솔자를 중심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매년 같은 학교 간 교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 답사가 어렵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여행사 관계자, 국외 교류학습 대상 학교 관계자 등의 현장답사 서류로 대신 가능
 - 3) 방문국 현지 대사관, 영사관, 여행사 등을 통하여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4) 학부모 동의율 90% 이상일 경우에만 추진한다.
 - 5) 해외 현지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생은 참가를 자제한다.
 - 6) 인솔교원의 국외출장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 ※ 근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9호(2018.2.1.))」 및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592(2017. 4. 11.)호

※ 제시된 지침 외에는 학교 구성원 협의 하에 학교 특성 및 체험학습 상황에 맞는 안전대책 수립 가능

- ② ③ 부득이하게 학교에서 계획 중이던 체험학습을 변경·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변경·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학부모(학생)에게 알린다.

5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 ① 응급상황 발생시 현지 응급구조기관(119,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한다.
- ② 학교 · 교사 · 학생 · 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즉시 연락한다.
- ③ 인명사고, 식중독, 전염병 등 보고 사안 발생 시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업무 주무부서에 유선 보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고, 사후에 사안보고서를 제출한다.(국립학교는 도교육청, 교육부 동시보고)

| 현장체험학습 시 보고해야 하는 사고 |

▶ 인사사고

- 사망 및 병원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중상 : 인원수 불문
- 동일 장소에서 같은 활동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체험학습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병원(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식중독 및 감염병 의심 증세

-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 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한 경우

- ④ 언론 보도 발생 시, 언론 대응 창구를 단일화하여 일관된 답변을 하도록 한다.

- 언론 대응 창구: 교장, 교감, 학년부장 등 인솔 책임자 중 한 명

- ⑤ 천재지변 또는 사안(사고) 발생으로 인해 학생안전 등 체험학습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학교 구성원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하여 혼란을 최소화한다.

- ⑥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된 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 시, 학교에서 병원비 등 선(先) 지급할 수 있는 예비비를 학교 회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병원비 정산 등의 문제로 학생들이 병원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
-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된 사고로 인한 당일 치료 · 당일 퇴원의 경우에만 해당됨
- 추진 절차: 병원 이송 및 진료 → 당일 치료 및 퇴원 → 병원비 정산(카드 결제 등 학교 선(先) 지급) → 퇴원 → 보험회사 및 학교안전공제회에 병원비 청구 → 학교회계에 병원비 반납

6 현장체험학습 관련 반부패 청렴 계획

- ①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위탁여행업체, 숙박업체, 수련업체, 운송업체 등 관련 업체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금품, 향응, 편의(교통, 숙박 등)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 ② 위탁여행업체, 숙박업체, 수련업체, 운송업체 등 관련 업체와의 계약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과정상의 투명성 및 청렴도를 제고한다.
- ③ 교육적 목적과 학생 안전 등을 위한 현장 체험학습 학생 인솔 및 사전답사와 관련한 모든 소요 비용은 학교 예산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에 대한 무료 입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계 없으나 무료입장 대상 학생의 공정한 선정 방법 등은 사전 계획서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7 본 매뉴얼의 적용 범위

- ① 학생의 모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하여는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도교육청 해당 부서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조치 사항을 우선으로 하며,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한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특수학교(급), 유치원, 체육교육(생존수영, 전지훈련 등), 경기도학생교육원(야영장) 등 체험학습의 경우 각 부서에서 안내된 계획을 바탕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운영한다.
- ③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은 현장체험학습 사전에 실시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학습자료](#), [현장체험학습 안전길라잡이](#), [청소년용 안전교육 가이드북](#)(청소년 활동안전센터) 등 참고·활용
- ④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최근 법령을 확인하여 추진한다.
- ⑤ 현장체험학습 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한 경우에 실내 활동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계획을 세우며, 부득이하게 실외 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학생 안전조치 후 실시한다.

MEMO

01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예방의 개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I.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절차(예시)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 추진 절차(예시)

II. 1일형 현장체험학습

1. 1일형 현장체험학습 절차(예시)
2. 1일형 현장체험학습 세부 추진 절차(예시)

III. 현장답사 안전점검 항목표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현장답사 안전점검 항목표(예시)
2. 1일형 현장체험학습 현장답사 안전점검 항목표(예시)

IV. 자체 점검표 및 안전 컨설팅 방안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자체점검표
2. 1일형 현장체험학습 자체점검표
3. 국외 현장체험학습 자체점검표
4. 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컨설팅 방안

2024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O2

현장체험학습별 안전조치 안내

현장체험학습별 안전조치 안내

I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절차(예시)1)

추진 단계		추진 내용
1단계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필수 포함 요소 :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대책,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실시,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이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2단계	동의율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 심의(활성화위원회) 동의 비율 기준 설정(활성화위원회) 1차 가정통신문 발송(자체동의 비율 반드시 안내) 결과 취합 및 학부모(학생) 동의율 산출 동의율 산출에 따른 체험학습 시행 여부 심의(활성화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역할 대체 가능
3단계	현장체험학습 운영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실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 (일정 및 장소, 추정금액 적정성 여부, 안전 계획 등) 계약 방법에 따른 심의
4단계	입찰 공고 및 제안서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행정실) 제안서 평가(활성화위원회)
5단계	1차 현장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서 등 답사 자료 준비, 현장 답사 시행 현장 답사는 반드시 1회 이상 실시(시기나 횟수는 학교 자율적 판단)
6단계	사전 업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점검표 포함 세부실천계획 수립 2차 가정통신문 발송 : 최종 참가 여부 확인 위생 점검 및 운전기사 음주측정을 위한 관계기관 공문 발송 인솔자 적정 확보 교사 외 인솔자에 대한 명예교사 위촉 교과 수업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육활동 미참가자 교육계획 수립 현장체험학습 활동 자료 준비 비상연락체계 점검 현장체험학습 일정 예약 점검하기 인솔자 복무 처리 등

1) 위 순서는 예시 사항이며 학교 실정에 따라 순서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추진 단계		추진 내용
7단계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인솔자, 참여 학생 여행자 보험 가입 외부안전요원 고용 계약(필요시)
8단계	세부계획서 교육지원청 제출 및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운영시 세부계획서 및 자체 점검표 교육지원청 제출(안전대책 수립 후)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 컨설팅 실시 (국외 현장체험학습은 규모에 관계없이 관련서류 제출 및 컨설팅 대상임) 교육지원청 컨설팅 결과 환류 컨설팅 결과 환류 내용 세부계획에 보완 반영
9단계	2차 현장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 직전 2차 현장답사 실시(필요시) 현장답사 1회 이상 의무이므로 사전 현장 답사 시기 및 횟수 조정 가능
10단계	안전연수 및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와 인솔자 사전 안전 연수 실시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 사전 안전 교육 실시 경기교육모아 '현장체험학습 사전/사후 정보방' 공개(의무사항)
11단계	현장체험학습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 차량 이용 당일 점검 비상연락체계 유지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에서 도착시까지 상시 인원 점검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보고 인솔자 상시 입장지도 및 안전요원 배치
12단계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자부담)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내역 공개
13단계	자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평가회 실시 학생,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14단계	실시 과정 및 평가 결과 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결과 공개(종료 후 2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교육모아 '현장체험학습 사전/사후 정보방' 탑재 체험학습과 관련된 사후 교육활동(권장)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 추진 절차(예시)

❖ 1단계 :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1단계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필수 포함 요소 :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대책,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실시,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이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	---

- 1)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확인한다.
- 2)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 소규모 체험학습 운영 방안
- ▶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 ▶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등 특정지역 지역 방안
- ▶ 학생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사고발생시 보고체계 수립 등 학생 안전대책 방안
-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방안
- ▶ 그 밖에 학교장이 체험학습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3)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 **구성**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이하 "활성화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당연직 교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학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심의 사항**
 - 숙박형 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기본계획 검토
 - * 대상이 전교생 또는 학년 전체인 경우 숙박형 체험학습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동의율 결정 및 동의율 조사 결과에 따른 실시 여부 결정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시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답사단 구성 및 시행
 - * 학부모 위원 불참 시 활성화위원회의 타 위원에게 위임 가능
 -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답사를 생략할 경우에만 안전대책 여부를 심의함.
 - (학교장이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경우)
 - 계약 관련 경쟁 입찰 진행시 제안서 평가

❖ 2단계 : 동의율 확보

2단계

동의율 확보

- 기본계획 심의(활성화위원회)
- 동의 비율 기준 설정(활성화위원회)
- 1차 가정통신문 발송(자체동의 비율 반드시 안내)
- 결과 취합 및 학부모(학생) 동의율 산출
- 동의율 산출에 따른 체험학습 시행 여부 심의(활성화위원회)
 -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역할 대체 가능

- 1) 현장체험학습 시행 여부에 대한 학부모(학생) 동의 비율은 ‘활성화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동의 비율은 학교 전체, 학년 전체 등 전체 학생 참여를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에만 해당되며 미참가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함
 - 일부 학생만 선택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하는 학부모(학생) 전원 동의로 진행
(일부 학생만 참여하는 경우는 활성화위원회 구성·심의 대상이 아님)
 - 조사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소별 예정가격, 식사, 프로그램(체험내용), 숙소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동의율 확보 대상 아님)
- 2) 동의 여부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조사하여 반드시 학교에서 정한 동의율을 안내해야 한다.
 - 특히 동의율 확보 미달 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 변경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 3) 학교에서 정한 동의율에 미달할 경우 계획서를 변경하고 동의율 기준을 재설정 할지 여부나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취소할지 여부를 활성화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
 - 취소가 확정된 경우 반드시 안내장을 통해 그 동안의 경과를 안내함
- 4) 자유로운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제출받으며 강압적 참여 유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개인정보보호 방법 강구)
- 5)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체한다.



동의율 관련 주의사항

- 수익자 부담의 교육활동이므로 활동 내용, 부담 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한 후 학생 ·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
- 고액 경비 및 위험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현장체험학습 및 동학년내 국내·외 분리 현장체험학습은 지양한다.
- 학생, 학부모의 과도한 동의 비율 제시로 사실상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국외 현장체험학습(전체 학생 대상)은 학년 전체 학부모(학생)의 9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

❖ 3단계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심의

3단계	현장체험학습 운영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실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 (일정 및 장소, 추정금액 적정성 여부, 안전 계획 등) - 계약 방법에 따른 심의
-----	--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가) 성격 :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심의

〈 초·중등교육법 〉

- ▶ 제32조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5.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 부담 사항
-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

- ▶ 제9조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2.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나) 역할

- 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건을 심의
- 현장체험학습의 운영 계약 우선순위 부여 결정에 대한 심의

다) 심의 내용

-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실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
- 계약 방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 참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학교행정 업무매뉴얼」 계약편

❖ 4단계 : 입찰 공고 및 제안서 평가

4단계

입찰 공고 및 제안서평가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행정실)
- 제안서 평가(활성화위원회)

- 1) 추정 금액에 따라 필요 시 입찰 공고를 하여 제안서를 접수한다.
- 2) 활성화위원회는 제안서를 평가한다.

❖ 5단계 : 1차 현장 답사

5단계

1차 현장 답사

- 제안서 등 답사 자료 준비, 현장 답사 시행
- 현장 답사는 반드시 1회 이상 실시(시기나 횟수는 학교 자율적 판단)

-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사전 현장 답사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2) 계약 전 또는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현장 답사를 실시하되 시기, 방법, 대상 등은 당해 계약 방식 및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 3) 계약 전 현장답사는 학부모위원회를 포함한 교사, 체험학습활성화위원 등이 가급적 함께 참여도록 한다.
- 4) 현장 답사는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되, 다음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현장답사 안전점검 항목표 참조〉

 - 실시경로·예정지와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의 교육목적 부합 여부
 - 거리, 소요시간, 시설(식당 포함)의 수용 인원 및 안전위생 상태
 -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 5) 답사 결과를 활성화위원회에 보고한다.
- 6) 답사 중 또는 답사 실시 전후에 관련 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향응 기타 편의 사항을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공무원 행동 강령 등 관련 규정 준수)

〈 공무원 행동 강령 등 관련 규정 준수 〉

- ▶ 학교의 교직원이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여행사 등으로부터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됨
- ▶ ‘팸투어’의 경우에 교통이나 숙박 등의 편의 제공은 공무원 행동 강령 제14조1항 3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향응’에 해당
 - 팸투어(Fam Tour) : 지역체나 항공사 등이 관광상품 마케팅, 특정 관광단지 홍보를 위해 관련자, 유관인사 등을 초청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것

02

❖ 6단계 : 사전 업무 처리

6단계	사전 업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점검표 포함 세부실천계획 수립 ● 2차 가정통신문 발송 : 최종 참가 여부 확인 ● 위생 점검 및 운전기사 음주측정을 위한 관계기관 공문 발송 ● 인솔자 적정 확보 ● 교사 외 인솔자에 대한 명예교사 위촉 ● 교과 수업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육활동 ● 미참가자 교육계획 수립 ● 현장체험학습 활동 자료 준비 ● 비상연락체계 점검 ● 현장체험학습 일정 예약 점검하기 ● 인솔자 복무 처리 등
------------	-----------------	---

- 1) 자체 점검표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장 결재를 득한다.
(대규모 운영 시 결재 직후 세부계획서 및 자체점검표 교육지원청 제출)
- 2) 2차 가정통신문(세부활동계획) 발송을 통하여 개인별 최종 참가 여부를 확인한다.
- 3) 학생 수송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 출발 당일 운전자 음주측정 및 호송 협조 요청 등
 -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제출하도록 계약시 포함
 - 출발 당일 운송사업자의 음주감지 결과 확인서 미제출시 학교 자체 음주감지기 실시
 - 학교 자체 음주 측정 시를 대비하여 사전 학교내 업무 분장으로 명시할 것을 권장
 -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 당일을 포함한 체험학습 기간 동안 차량 운행 전 음주 감지 실시
 - 2일, 3일째는 해당 지역 경찰서에 숙소 출발 전 음주측정 요청 등 방안 마련
- 4) 인솔자 적정 확보 운영
 - 학급당 2명 또는 참여 학생 25명 기준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함을 권장하나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급당(참여 학생 25명 당) 인솔 교사 1명 이상이 인솔할 수 있다.
- 5) 현장체험학습 예산 품의
- 6) 교사 외 인솔자에 대한 명예교사 위촉
 -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자원인사, 학부모,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할 수 있다.(반드시 학교 내부 규정에 의한 투명한 위촉과정이 요구됨)
 - 위촉된 ‘명예교사’의 현장체험학습 담사, 학생 인솔 등에 소요되는 경비(여비)는 학교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한다.(기간제 교사, 명예교사가 인솔자인 경우는 여행자 보험 반드시 가입)
- 7) 현장체험학습 전 학생 및 인솔자에 대한 휴대폰의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학교에서 관리한다.
 - 학교 · 교사 · 학생 · 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 시 즉시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한다.

- 8) 현장체험학습은 출석수업 기간 중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므로 대상 학생 전원이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질병 등 개인사정에 따라 불참할 수 있으므로 미참가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미참가 학생에 대한 일률적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및 결석 처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참가학생에 대해서만 내신 성적을 반영하거나 교내상 수여와 같이 미참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불참 학생은 저소득층자녀 기타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학교운영비를 편성하여 가급적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 지방자치단체 지원비,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 ▶ 신청 및 정산서 제출
 - 숙박형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 전 신청서 제출(해당 교육지원청)
 - 숙박형체험학습(수학여행) 종료 후 정산서 제출
-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의 지원단가 및 세부사항은 별도 공문으로 안내

- 9) 인솔자(명예 교사 포함)에 대한 복무처리를 실시한다.

- 인솔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처리 등

❖ 7단계 : 계약

7단계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인솔자, 참여 학생 여행자 보험 가입 ● 외부안전요원 고용 계약(필요시)
-----	----	---

- 1) 체험학습 관련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최근 법령을 확인하여 추진한다.
- 2) 계약 형태를 구분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수련활동의 시기, 장소, 학교실정,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직영방식(분할계약), 일부위탁(일부분할계약), 위탁방식(일괄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다.
- 3) 계약 시 필수 반영 사항(여행, 숙박·식당업체 공통사항)
 - 가)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명시
 - 나)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과 책임 소재, 책임 범위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
 - 위탁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탁계약자가 책임진다는 내용 기재

- 다)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여행자 보험 가입
-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국내·외 여행(공정 거래위원회 고시)을 참조하여 계약서 작성
 - 학생·인솔자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및 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여행자 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

▶ **여행자 안심공제** 또는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 대상활동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및 1일형 현장체험학습 중 **고위험 활동(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 등)**
- 가입인원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를 모두 포함 하여 가입
 - * 상해(질병)로 인한 사망, 후유 장애 등 정액 지급이 가능한 보험 위주로 가입
 - * 특히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후유장애, 입원의료비, 배상책임, 치료비, 외래의료비 등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위주로 가입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구분	보험종류
차량	자동차종합보험
수련시설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8천만원 이상, 사고당 무한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숙식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4) 계약 시 유의사항

- 가) 소정의 계약서를 사용하되 기타사항에 상호 협의사항 명시 가능
 - 동일 행사 기간에 타교생 수용여부 문제 등
- 나)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 포함 여부 확인
- 다) 시설의 숙박정원 :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준수
- 라)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 가입(종류, 보상 범위 등) 여부 확인
- 마) 운전자 음주감지 실시 및 안전운전 명시(음주 확인 시 운전자 교체, 112신고조치 포함)
- 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명시

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예시)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3년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 사업 예정 금액의 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하는 등 과도한 제한은 금지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 제안 업체 경영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의 재무 구조 - 신용평가 등급 		
정성적 평가 분야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자료집 충실통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회사 여부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수련활동의 경우 : 청소년지도사)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10 20 15 20	
정량적 평가 분야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3년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 사업 예정 금액의 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하는 등 과도한 제한은 금지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 제안 업체 경영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의 재무 구조 - 신용평가 등급 	15 10 10	

5) 기타 유형별 계약 시 유의사항

가) 외부 안전요원과 계약할 경우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등에 동행하고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 생활 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단, 안전요원 이수교사가 인솔자일 경우 별도의 안전요원 없이 인솔자를 겸하여 안전요원 역할을 할 수 있다.)
- 외부 안전요원은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여행업체와의 계약 시 안전 요원 관련 사항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여 배치를 요구한다.
 - * 학교 직접 채용시 임금은 담당부서에서 안내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참조
 - * 경기교육모아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인력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안전요원 인력풀](#), [크레온](#) 등을 활용하여 안전요원 확보
 - * 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 인솔자·학생 등과 외부 안전요원 간의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회 및 교육을 실시한다.
- 외부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 체험학습에 동행하는 외부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한다.
 - * 여행업체에서 채용하더라도 학교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 경력 조회 가능
 - * 개별 법률에 의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참고

나) 숙박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 여행 계약서(소정 양식)
- ▶ 견적서(비용 내역서)
- ▶ 식단표, 객실 배치도, 교육 일정표(프로그램), 숙박업체 현황표
-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확보할 수 있는 안전 점검 결과

다) 운송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 계약서(표준계약서 사용)
- ▶ 견적서
- ▶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를 운수업체에 요구하여 확인
 - * 제출받은 서류는 교통안전공단(www.kotsa.kr)에서 진위여부 확인
 -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는 계약에 필요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을 대체할 수 있음
- 학생수송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확인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① 전세버스 계약시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차량 계약
 - *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 ② 운수회사로부터 받은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의 ‘이상없음’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추가 확인
 - * 운전자 적격 여부는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도 확인 가능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4항1호,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2항 2호, 3호(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 ③ 계약서(배차 통보서)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 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 ④ 학교장은 운수회사 담당자·계약관련자·인솔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차량 점검 및 운전자 안전 운전 당부
 - ⑤ 운전자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 실시 요청
 - * 차량 비상탈출 방법, 안전벨트 착용 및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전종사자의 준수 사항)
 - ⑥ 대열운행 예방을 위해 시간차를 둔 순차적 출발과 안전거리 향시 확보, 과속운행 예방을 위해 중간 집결 지양하여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
 - ⑦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확인, 휴게소 안전교육 실시, 운전자에 대한 과속운행, 음주 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끼어들기 금지 등 안전 운전 요청 및 확인
 - ⑧ 학생수송차량 입찰시 차령 제한 자체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별표2]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라) 수련시설과 계약하는 경우

- ▶ 수련시설 이용 계약서(소정 양식)
 - 교육청 및 지자체 직영 수련시설의 경우 '사용신청서'로 계약서 대체
- ▶ 견적서(비용 내역서) - 식비, 교육활동비, 시설이용료 등 세부내역 명시
- ▶ 식단표, 객실 배치도(방 배정), 교육 일정표(프로그램)
- ▶ 수련시설 현황표(강당, 체육관, 모험시설, 수영장, 식당의 규모 등)
- ▶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및 인증서(인증 프로그램)사본
- ▶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
-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교육청 관련은 제외)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체험활동 인증프로그램을 위탁할 경우, 입찰 관련 유의사항】

- ▶ 체험프로그램 위탁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입찰자격 또는 대상'에 반드시 인증프로그램 허가·등록 업체로 명기
- ▶ 허가·등록된 체험 프로그램 업체가 프로그램, 교통수단, 숙박, 식사 등을 포괄적으로 등록한 경우, 전체를 위탁할 수 있고, 프로그램만 허가·등록된 업체에 위탁하고 기타 교통수단 등은 별도로 계약(입찰)할 수도 있음
- 예) 스키캠프 같은 경우 스키캠프 체험 프로그램 등록 업체만 입찰 가능하며 스키캠프로 허가·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위탁하여 위탁받은 업체가 스키캠프 등록업체에 재위탁할 수 없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 2항)

❖ 8단계 : 세부계획서 교육지원청 제출 및 컨설팅

8단계 세부계획서 교육지원청 제출 및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운영시 세부계획서 및 자체 점검표 교육지원청 제출(안전대책 수립 후) •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 컨설팅 실시 (국외 현장체험학습은 규모에 관계없이 관련서류 제출 및 컨설팅 대상임) • 교육지원청 컨설팅 결과 환류 • 컨설팅 결과 환류 내용 세부계획에 보완 반영
---	--

-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운영 규모는 3학급 이하 또는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단위로 운영함을 기본으로 한다.
(4학급 이상 그리고 100명 이상 시행할 경우 세부계획서 및 체험학습 자체점검표 등 안전 대책 수립 후 교육지원청에 제출.)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같이 여러 곳을 방문하는 형태의 대규모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는 관련서류 제출 후 **교육지원청의 컨설팅 실시 대상이며**, 컨설팅 일정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한다.
(단, 수련활동과 같이 한 곳에 머무르는 대규모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는 세부계획서 및 자체점검표만 제출, 교육지원청 컨설팅 대상이 아니지만 서류 검토 후 필요시 또는 학교의 요청 등에 의해 실시할 수 있음)

- 2) 소규모 체험학습의 경우 단위학교별 '자체점검표'를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한 뒤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 3) 대규모 인원이 소규모 그룹으로 나눠서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숙소에서만 대규모로 숙박하는 경우 안전요원 배치 등을 포함하는 안전 조치를 한 경우 컨설팅 대상은 아니나 숙소에서 대규모 활동(레크레이션 등)이 계획된 경우 교육지원청 컨설팅 대상임.

| 세부계획서와 자체점검표 제출 대상 및 컨설팅 대상 구분 |

체험 구분	규모	소규모	대규모	비고
1일형 체험학습		제출 ×, 컨설팅 ×	제출 ×, 컨설팅 ×	
수련활동		제출 ×, 컨설팅 ×	제출 ○, 컨설팅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제출 ×, 컨설팅 ×	제출 ○, 컨설팅 ○	
국외 체험학습		제출 ○, 컨설팅 ○	제출 ○, 컨설팅 ○	

02

❖ 9단계 : 2차 현장답사

9단계 2차 현장답사

- 시행 직전 2차 현장답사 실시(필요시)
- 현장답사 1회 이상 의무이므로 사전 현장 답사 시기 및 횟수 조정 가능

- 1) 숙박형 체험학습은 현장 답사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2) 계약 전 또는 체험학습 실시 전 현장 답사를 실시하되 시기, 방법, 대상 등은 당해 계약 방식 및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 3) 현장 답사는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되, 다음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현장답사 점검 항목 참조>
 - 실시경로·예정지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의 교육 목적 부합 여부
 - 거리, 소요시간, 시설(식당 포함)의 수용 인원 및 안전위생 상태
 -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 4) 답사 중 또는 답사 실시 전후에 관련 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향응 기타 편의사항을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공무원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 준수)

❖ 10단계 : 안전연수 및 안전교육

10단계	안전연수 및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인솔자 사전 안전 연수 실시 •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 사전 안전 교육 실시 • 경기교육모아 '현장체험학습 사전/사후 정보방' 공개(의무사항)
------	----------------	---

- 1)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 2)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차량 이용, 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 ▶ 교통수단별 안전교육 실시(선박, 항공기, 기차), 기타 안전사고 예방 교육, 공중시설 이용예절
- ▶ 숙소 등 체험시설 상황발생 대비 행동요령(대피로 확인 등) 교육
- ▶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교육
-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유해 물품을 절대 휴대하지 않도록 교육
-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안전교육 실시(여행자 보험가입 적극 권장)

-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학습자료, 현장체험학습 안전길라잡이, 청소년용 안전교육 가이드북](#) (청소년활동안전센터) 등 참고 활용
- 학교급 형태에 맞게 편집·수정 인쇄하여 활용 가능(권장)
- 숙소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실시

- 3)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경기교육모아 '[현장체험학습 사전/사후 정보방](#)' 공개(의무사항)

항목	입력내용	항목	입력내용
체험학습명		학교명	정식명칭입력
학교급	초, 중, 고, 특수	지역	소속 교육지원청 입력
활동구분		실시기간	~
대상학년	5, 5~6 (해당학년 숫자 입력)	재적/침가인원	대상학년 전체 학생 재적 및 참가인원
주요행선지	행선지 1~2곳 입력 수련활동은 수련시설명	학생1인당경비	[사후 입력] 1인당 평균 경비
학부모동의율	%	계약방법	
운송업체명		숙박업소명	
이동수단	주요 이동수단	학생만족도결과	[사후 입력] 학생 설문 결과 점수
운영규모	대규모/소규모	비고	

❖ 11단계 : 현장체험학습 운영

11단계 현장체험학습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차량 이용 당일 점검 ● 비상연락체계 유지 ●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에서 도착시까지 상시 인원 점검 ●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보고 ● 인솔자 상시 입장지도 및 안전요원 배치
-------------------------------------	---

1) 단체 차량 이용 점검

- 운행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확인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 운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를 확인(종합의견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추가 확인)
 - * 계약서(통보서)의 자동차 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 *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 자격증명’으로도 확인 가능하나 가급적 계약서(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할 것
- 출발 전 학교장은 계약관련자, 운수회사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차량점검(차량점검표는 학교에 보관)
-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음주측정 및 에스코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 당일 경찰의 음주감지 협조가 어려울 경우 자체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후 출발할 수 있음.(음주가 확인될 경우 즉시 운전자 교체 및 112에 신고)
- 대열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을 일정시간(최소 1분 이상)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출발·운행한다.
- 운전자의 학생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유사시 차량 비상탈출 방법, 안전벨트 및 차량 내 소화기, 탈출용 망치 사용법)한다.
- 교사는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확인, 운전자에 대한 과속운행·음주운전·신호위반·대열운행·끼어들기 금지 요청 등 안전 운전 지도를 실시한다.

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시 안전요원 상시 배치

- 안전요원을 학생 50명당 1명씩 배치해야 한다.
- 외부안전요원 또는 안전요원 연수 이수 교원 활용
 - (단, 안전요원 이수교사가 인솔자일 경우 별도의 안전요원 없이 인솔자를 겸하여 안전요원 역할을 할 수 있다.)
- 1일형 체험학습 운영 시 안전요원 상시 배치는 권장 사항

3)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한다.

-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 · 학부모 및 인솔자 비상연락처 확보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 시 문자 또는 SNS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
- 사안 발생 즉시 구호조치와 신고 및 시·군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피해 상황 보고

4)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 실시

- 교육프로그램 담당교사는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한다.
- * 학교 자체계획 또는 수련기관 및 위탁업체와 협의를 통해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수련활동 안내사항

- 수련활동 프로그램 시작 전 청소년수련지도사에 의해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 대규모 수련활동의 경우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안전요원을 대신한다.

5) 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

-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은 수련 시설 및 위탁업체에 명단과 보호,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통보하여 안전지도 대책을 수립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 현장체험학습 출발 당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학생, 학부모의 동의하에 체험학습에 참여 시키지 않을 수 있음

6) 인솔자는 학급당 2명 이상 확보를 권장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활용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급당 1명 인솔할 경우 교사가 인솔
- 인솔자는 인솔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포함하는 총 인원수

7)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중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청소년지도사·문화해설사·큐레이터 등 전문 교육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위탁교육 시에도 인솔자가 반드시 입장하여 교육활동 실시
- 인솔자는 교육활동 현장에서 교육내용·안전문제·학생호응도 등을 관찰하고, 안전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응
- * 위탁교육 중 인솔자는 교육현장 무단이탈 금지

8) 비상시에 대비한 상비약품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이동·체험활동 장소의 각종 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9)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적합한 생활지도 및 학생 안전교육 매뉴얼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이동 장소마다 참여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되는 학생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합한 생활지도를 실시 한다.
- 특히 선박·항공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 탈출 방법 교육
 - * 비상신호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피난요령, 구명기구 사용법 등을 의무적으로 여객에게 출항 후 1시간 이내 안내(선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업체에서의 안전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솔자는 이행을 요구

10) 해양 수상 활동, 갯벌체험, 산행, 캠핑(야영), 전시·공연 관람, 겨울철 야외활동 계획시 사전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 해양 수상 활동 사전 확인 〉

- ▶ 해양경찰서장, 시·군·구에 등록 업체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적정 배치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 ▶ 학생 교육 시 활용할 수상레저기구(「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등의 등록여부 확인
- ▶ 인증 프로그램 수련활동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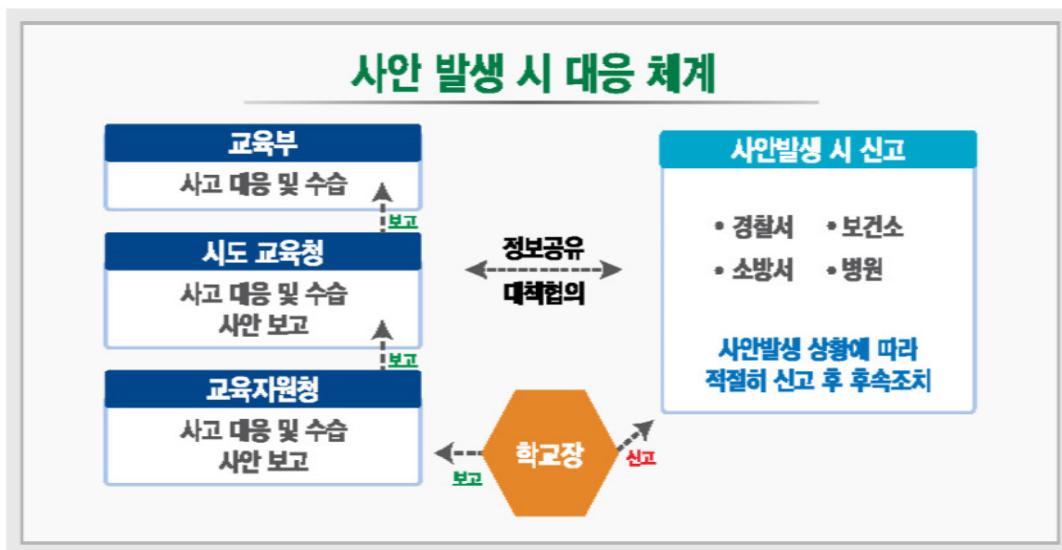
11) 식중독 등 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곳을 선정
 - * 학교장은 필요시 사전에 관할 시·군·구(안전 및 급식위생 담당 부서)에 실시 기간, 실시 장소(급식 장소)를 포함한 일정을 통보하고 위생·안전 점검 결과조회 공문 요청
 - *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운영으로 소형 일반음식점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시·군·구의 인력 운용상 위생 점검이 어려운 경우 음식위생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 후 섭취토록 지도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모범음식점 등 이용)
-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생 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
- 동일 원인(동일 음식)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 유사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할 경우 치료 조치를 한 후 인솔책임자는 즉시 학교장 보고

12)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 비상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 * 사안 발생 즉시 구조 신고 후 구조 작업 실시
- 학교·교사·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 시 즉시 SNS 등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한다.
- 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한 사안(고) 인지 즉시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우선 보고하고, 사안보고서를 제출한다.
- 현장체험학습 사안발생 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종합계획에 따라 학교, 교육지원청, 경기도 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처한다.

- 초·중·고 →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반드시 업무담당과, 융합교육정책과 동시 보고)
 - 【융합교육정책과 ☎ 주간 031-820-0685~7, FAX 031-821-1094, 야간 031-820-0514, 0524】
 - ※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와 주관부서에 동시 보고할 것
 - ※ 국립학교는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련 부서에 동시 보고
 - ※ 야간은 당직 책임자가 보고책임자의 임무 수행



〈 현장체험학습 관련 보고해야 하는 사고 〉

- ▶ 인사사고
 - 사망 및 병원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중상 : 인원수 불문
 - 동일 장소에서 같은 활동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체험학습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병원(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 ▶ 식중독 및 감염병 의심 증세
 -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 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한 경우



현장체험학습 사안 보고서

1. 수신인 :

2. 발신인 :

3. 보고 일시 : 년 월 일 시

4. 기본 사항 ※ 발생 즉시 유선보고 후, 현장체험학습 사안보고서 송부

학교명		전화번호	
체험학습 소재지			
사안 발생 일시		사안명	
사안 발생 교사 또는 학생 정보	〈사고 학생 수가 많을 경우 별도 자료 첨부〉		

5. 사안 개요

가. 사안 내용 (6하 원칙에 의해 기술)
나. 언론보도 내용 (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다. 경찰 조사 내용 (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6. 조치사항 및 향후 사안 수습 계획

❖ 12단계 : 정산

12단계

정산

- (수익자부담)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내역 공개

1) 경비 집행

-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집행
- 현지에서 직접 집행해야 할 경비는 임시 출납원을 임명하여 집행하고, 학교 법인카드 사용

2) 인솔자의 여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 인솔자의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 ▶ 인솔자의 여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되 일비 이외의 경비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업체에 일괄 송금
- ▶ 여비의 지급 방법, 대상 및 절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정함

- 인솔 교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 ▶ 활동 실시 전 시간외 근무명령을 득한 자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 ▶ 인솔 교직원은 야간 생활지도 근무조 편성을 하도록 하고 그 초과근무 시간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3) 정산

-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정산한다.
 - 현장체험학습 종료 다음날부터 10일(토·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 정산 및 사업 추진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한다.
- ※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이어서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출하거나 학생자치회의를 통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중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으로 집행하도록 함

❖ 13단계 : 자체 평가

13단계

자체 평가

- 자체 평가회 실시
- 학생,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1) 현장체험학습 실시 후,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실시 후에는 학생·교사 대상의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평가 등

2) 학교에서는 만족도 결과 및 평가결과 등을 다음 연도 운영 계획, 업체 및 장소 선정, 프로그램 질 개선 등의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숙박형 체험학습 만족도 조사표>

❖ 14단계 : 실시 과정 및 평가 결과 탑재

14단계	실시 과정 및 평가 결과 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결과 공개(종료 후 2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교육모아 '현장체험학습 사전/사후 정보방' 탑재 체험학습과 관련된 사후 교육활동(권장)
------	-------------------------	--

1) 목적

- 현장체험학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교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만족도 공개 등을 통하여 업체의 책무성 제고 및 운영 프로그램의 질 개선
- 2) 사후 필수 항목 정보방 입력 내용(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전교생,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만 입력할 것)
- 3) 공개 방법 : 경기교육모아 '[현장체험학습 사전/사후 정보방](#)' 탑재
- 사전 입력 정보 변경사항 수정 및 사후 정보 입력

항목	입력내용	항목	입력내용
체험학습명		학교명	정식명칭입력
학교급	초,중,고,특수	지역	소속 교육지원청 입력
활동구분		실시기간	~
대상학년	5, 5~6 (해당학년 숫자 입력)	재적/참가인원	대상학년 전체 학생 재적 및 참가인원
주요행선지	행선지 1~2곳 입력 수련활동은 수련시설명	학생1인당경비	[사후 입력] 1인당 평균 경비
학부모동의율	%	계약방법	
운송업체명		숙박업소명	
이동수단	주요 이동수단	학생만족도결과	[사후 입력] 학생 설문 결과 점수
운영규모	대규모/소규모	비고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후 20일 이내 탑재(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의무사항이 아님)

Ⅱ 1일형 현장체험학습

1 1일형 현장체험학습 절차(예시)2)

추진 단계	추진 내용
1단계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형 현장체험학습 학교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포함요소 :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대책, 체험학습 안전교육 실시,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2단계 시기 및 장소 안내장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가정통신문 발송(주제 및 장소 등 정보 안내)
3단계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실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 (일정 및 장소, 추정금액 적정성 여부, 안전 계획 등) - (필요시) 계약 방법에 따른 심의
4단계 입찰 공고 및 제안서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행정실) (필요시) 제안서 평가
5단계 현장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답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이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현장답사 생략 가능(고위험 활동은 생략 불가)
6단계 사전 업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점검표 포함 세부 실천 계획 수립 2차 가정통신문 발송 (최종 참가 인원 확정) 위생/안전점검 요청(필요시) 교사 외 인솔자에 대한 명예교사 위촉 인솔자 적정 확보 및 아동학대·성범죄 전력 조회 교과 수업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육활동 현장체험학습 활동 자료 준비 미참가자 교육계획 수립 비상연락체계 점검 현장체험학습 일정 예약 점검하기 인솔자 복무 처리 등

2) 위 절차는 예시이며 학교의 실정에 따라 추가하거나 순서 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함

추진 단계		추진 내용
7단계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여행자 보험가입 계약(운영위원회에서 가입 결정 시)
8단계	안전연수 및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와 인솔자 사전 안전 연수 실시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 안전 교육 실시 (해당시) 대중교통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 대책 확보
9단계	현장체험학습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 차량 이용 당일 점검 비상연락체계 유지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 실시 인솔자 상시 입장지도 및 대규모 운영 시 안전요원 배치 권장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보고
10단계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수익자 부담 경비 집행 내역 공개 경비 지급
11단계	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사후 교육활동(권장) 자체 평가(만족도 조사 등) 및 차년도 결과 활용

2 1일형 현장체험학습 세부 추진 절차(예시)

▣ 1단계 :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1단계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형 현장체험학습 학교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포함요소 :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대책, 체험학습 안전교육 실시, 그 밖에 학교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	---

- 1)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확인한다.
- 2)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
 - 대규모 운영시 소규모 형태의 운영 방안 및 안전대책 수립
- ▶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 ▶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등 특정지역 지향 방안
- ▶ 학생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학생 안전대책 방안
-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방안
- ▶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2단계 : 시기 및 장소 안내장 발송

2단계	시기 및 장소 안내장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가정통신문 발송(주제 및 장소 등 정보 안내)
-----	-------------------------------	--

- 학부모에게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소별 예정 가격, 프로그램(체험내용), 일정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3단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3단계	학교운영위원 회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실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 (일정 및 장소, 추정금액 적정성 여부, 안전 계획 등) - (필요시) 계약 방법에 따른 심의
-----	-----------------------	--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가) 성격 :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심의

〈 초·중등교육법 〉

- ▶ 제32조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5.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 ▶ 제9조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2.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나) 역할 :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약 우선순위 부여 결정에 대한 심의

다) 심의 내용

-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실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
- 계약 방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 4단계 : 입찰 공고 및 제안서 평가

4단계

입찰 공고 및
제안서평가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행정실)
- (필요시) 제안서 평가

1) 필요시 추정금액에 따라 입찰 공고를 하여 제안서를 접수한다.

2) 제안서를 평가한다.

❖ 5단계 : 현장답사

5단계

현장답사

- 현장답사 실시
 - 학교장이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현장답사 생략 가능(고위험 활동은 생략 불가)

1) 학부모, 교사 등이 함께 참여함을 권장하나, 학교 실정에 따라 실제 업무 담당자 또는 인솔자 중심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2) 현장 답사는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되, 다음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1일형 현장체험학습 현장답사 점검 항목 참조>

- 실시경로·예정지와 체험 활동의 교육목적 부합 여부
- 거리, 소요시간, 시설(식당 포함)의 수용 인원 및 안전위생 상태
-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3) 답사 중 또는 답사 실시 전후에 관련 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향응 기타 편의 사항을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공무원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 준수)

❖ 6단계 : 사전 업무 처리

6단계	사전 업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점검표 포함 세부 실천 계획 수립 • 2차 가정통신문 발송 (최종 참가 인원 확정) • 위생/안전점검 요청(필요시) • 교사 외 인솔자에 대한 명예교사 위촉 • 인솔자 적정 확보 및 아동학대·성범죄 전력 조회 • 교과 수업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육활동 • 현장체험학습 활동 자료 준비 • 미참가자 교육계획 수립 • 비상연락체계 점검 • 현장체험학습 일정 예약 점검하기 • 인솔자 복무 처리 등
------------	-----------------	---

1) 자체점검표를 포함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한다.

2) 2차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하여 현장체험학습 세부 안내 및 개인별 최종 참가 동의 및 참가 인원을 확정한다.

- 인솔자 없이 학생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에티켓 교육을 실시하고 가능한 출퇴근 시간 혼잡 상황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다중 밀집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한다.

3) 학생 수송버스 운전자 음주 감지 방안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제출하도록 계약시 포함
- 출발 당일 운송사업자의 음주감지 결과 확인서 미제출시 학교 자체 음주감지기 실시
- 학교 자체 음주 측정 시를 대비하여 학교내 업무 분장으로 명시할 것을 권장
- 음주 확인 시 즉시 112신고 조치 및 운전자 교체

4) 교사 외 인솔자에 대한 명예교사 위촉

-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인사, 학부모,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할 수 있다.(반드시 학교의 내부 규정에 의한 명예교사의 투명한 위촉과정이 요구됨)

- 위촉된 ‘명예교사’의 체험학습 답사, 학생 인솔 등에 소요되는 경비(여비)는 학교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한다.(기간제 교사, 명예교사가 인솔자인 경우는 여행자 안심공제 또는 여행자 보험 가입 권장)

5) 인솔자 적정 확보 운영

- 학급당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함을 권장하나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급당 1명이 인솔할 수 있다.
- ※ 학급당 1명이 인솔할 경우 교사가 인솔해야 함.

6)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교육자료(현장체험학습 정보) 등을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한다.

- 학부모 홍보(가정통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

7) 현장체험학습은 (출석)수업 기간 중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므로 대상 학생 전원이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질병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불참할 수 있으므로 미참가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불참 학생에 대한 일률적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시행 및 결석 처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참가 학생에 대해서만 내신 성적을 반영하거나 교내상 수여 등을 하여 불참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불참 학생은 저소득층자녀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하거나 학교운영비를 편성하여 가급적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 지방자치단체 지원비 등을 통한 지원 방안 강구

8) 현장체험학습 전 학생과 인솔자에 대한 휴대폰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학교에서 관리한다.

- 학교 · 교사 · 학생 · 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즉시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한다.

9) 인솔자(명예 교사 포함)에 대한 복무처리를 실시한다.

- 인솔 교원의 시간외근무수당

- ▶ 활동 실시 전 시간외 근무명령을 득한 자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 ▶ 인솔교원은 생활지도 근무조 편성을 하도록 하고 그 초과근무 시간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7단계 : 계약

7단계

계약

-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여행자 보험가입 계약(운영위원회에서 가입 결정 시)

- 1)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최근 법령을 확인하여 추진한다.
- 2) 계약 시 필수 반영 사항(여행, 식당 업체 공통사항)
 - 가)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명시
 - 나)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과 책임의 소재, 책임의 범위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
 - 위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탁계약자가 책임진다는 내용 기재
 - 다)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여행자 보험 가입
 - 여행업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국내·외 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참조하여 계약서 작성
 - 학생·인솔자 여행자 보험 가입 결정 및 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여행자 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

▶ 여행자 안심공제 또는 여행자 보험 가입

- 대상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를 포함하여 가입
- 필수가입 활동 : 1일형 현장체험학습 중 **고위험 활동(수상·수영·항공·산악·장기도록 등)**
 - * 상해(질병)로 인한 사망, 후유 장애 등 정액 지급이 가능한 보험 위주로 가입
 - * 특히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후유장애, 입원의료비, 배상책임, 치료비, 외래의료비 등 정액·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 위주로 가입
 - * 상기 외,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 가입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구분	보험종류
차량	자동차종합보험
수련시설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8천만원 이상, 사고당 무한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숙식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4) 계약 시 유의사항

- 가) 소정의 계약서를 사용하되 기타사항에 상호 협의사항 명시 가능
 - 동일 행사기간에 타교생 수용여부 문제 등
- 나)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의 관련 대책 포함 여부 확인
- 다) 시설의 정원 :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준수
- 라)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 가입(종류, 보상 범위 등) 여부 확인

- 마) 운전자 음주감지 실시 및 안전운전 명시(음주 확인 시 운전자 교체, 112신고조치 포함)
바)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명시

5) 기타 계약 유형별 유의사항

가) 운송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 계약서(표준계약서 사용)
- ▶ 견적서
- ▶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등을 운수업체에 요구하여 확인
 - * 제출받은 서류는 교통안전공단(www.kotsa.kr)에 진위여부 확인
 -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는 계약에 필요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을 대체할 수 있음
 - 운행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확인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 운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를 확인(종합의견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추가 확인)
 - * 계약서(통보서)의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 *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도 확인 가능하나 가급적 계약서(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비교, 확인할 것
 - * 계약시 운전자는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할 것을 명시한다.(경찰관 또는 교직원 요청시)

나) 수련시설과 계약하는 경우

- ▶ 수련시설 이용 계약서(소정 양식)
 - 교육청 및 지자체 직영 수련시설의 경우 ‘사용신청서’로 계약서 대체
- ▶ 견적서(비용 내역서) - 식비, 교육활동비, 시설이용료 등 세부내역 명시
- ▶ 식단표, 교육 일정표 (프로그램)
- ▶ 수련시설 현황표 (강당, 체육관, 모험시설, 수영장, 식당의 규모 등)
- ▶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및 인증서(인증 프로그램)사본
- ▶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
-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교육청 관련은 제외)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체험활동 인증프로그램을 위탁할 경우, 입찰 관련 유의사항】

- ▶ 체험프로그램 위탁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입찰자격 또는 대상’에 반드시 인증프로그램 허가·등록 업체로 명기
- ▶ 허가·등록된 체험 프로그램 업체가 프로그램, 교통수단, 숙박, 식사 등을 포괄적으로 등록한 경우, 전체를 위탁할 수 있고, 프로그램만 허가·등록된 업체에 위탁하고 기타 교통수단 등은 별도로 계약(입찰) 할 수도 있음
 예) 스키캠프 같은 경우 스키캠프 체험 프로그램 등록 업체만 입찰 가능하며 스키캠프로 허가·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위탁하여 위탁받은 업체가 스키캠프 등록업체에 재위탁할 수 없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 2항)

라) 외부 안전요원과 계약할 경우

- 1일형 현장체험학습 중 대규모 운영 시, [고위험군 활동\(수상·수영·항공·산악·장기도보·화학물질 사용·위험기구 사용 등\)](#)의 경우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고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권장 사항임)
- 외부 안전요원은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여행업체와의 계약 시 안전 요원 관련 사항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여 배치를 요구한다.
 - * 학교 직접 채용시 임금은 담당부서에서 안내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참조
 - * 경기교육모아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인력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안전요원 인력풀](#), [크레온](#) 등을 활용하여 안전요원 확보
 - * 외부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이수자
- 인솔자·학생 등과 외부 안전요원 간의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회 및 교육을 실시한다.
- 체험학습에 동행하는 외부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 8 단계 : 안전연수 및 안전교육

8단계

안전연수 및
안전교육

- 교사와 인솔자 사전 안전 연수 실시
-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 안전 교육 실시
- (해당시) 대중교통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 대책 확보

1) 학교장은 교사와 인솔자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 ▶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의 이동 수단별 사전 안전교육을 하되, 가급적 안전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
 - 안전 전문가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한적십자사 체험학습 안전교육담당,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인명구조협회, 소방서, 소방안전협회, 안전요원 연수 이수교원 등 인적자원 활용

2)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차량 이용, 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 ▶ 교통수단별 안전교육(선박, 항공기, 기차), 기타 프로그램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공중시설 이용예절 교육
- ▶ 숙소 등 체험시설 상황발생 대비 행동요령(대피로 확인 등) 교육
- ▶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교육
-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유해 물품을 절대 휴대하지 않도록 교육
-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관련 안전교육 실시(여행자 보험가입 적극 권장)

-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학습자료, 현장체험학습 안전길라잡이, 청소년용 안전교육 가이드북](#)
(청소년활동안전센터) 등 참고·활용

3) 대중교통을 이용한 1일형 체험학습 시 안전 확보 대책

- 2명 이상이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모둠 편성 권장
-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교통예절 및 다중 밀집상황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 담임교사는 귀가 전 집합 '귀가 안전교육'을 실시함
- 안전한 귀가 확인을 위해 문자 전송 등 확인 방법 권장
- 대중교통을 개별로 이용하는 체험학습의 경우 여행자 보험 가입 적극 권장
- 가급적 출·퇴근시간 등의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이동하도록 계획

❖ 9 단계 : 현장체험학습 운영

9단계	현장체험학습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차량 이용 당일 점검 • 비상연락체계 유지 •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 실시 • 인솔자 상시 임장지도 및 대규모 운영 시 안전요원 배치 권장 •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보고
-----	------------------	--

1) 단체 차량 이용 점검

- 운행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 운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확인(종합의견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 추가 확인)
 - * 계약서(통보서)의 자동차 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 *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 자격증명'으로도 확인 가능하나 가급적 계약서(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비교, 확인할 것
- 출발 전 학교장은 계약관련자, 인솔책임자 및 운수회사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별첨] 서식의 차량안전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차량점검을 실시하게 함(차량점검표는 학교에 보관)
-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 * 관련 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
 - * 운송사업자의 음주감지 결과 확인서 미제출시 학교자체 음주감지 실시
 - * 운전자의 음주 확인 즉시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시 학교는 112 신고 및 운전자 교체



계약특수조건

-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제출 등에 대한 내용 명시
-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할 것 명시

- 대열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을 일정 시간(최소 1분 이상)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출발·운행한다.
 - 운전자의 학생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유사시 차량 비상탈출 방법, 안전벨트 및 차량 내 소화기 사용법,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 교사는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확인, 운전자에 대한 과속운행·음주운전·신호위반·대열운행·끼어들기 금지 등 안전 운전 지도를 실시한다.
- 2)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비상연락체계 가동
- 체험학습 참여 학생 · 학부모 및 인솔자 비상연락처 확보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 시 SNS 등을 활용하여 연락
 - 사안 발생 즉시 구호조치 신고 및 시·군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피해 상황 보고
- 3) 체험학습 진행 시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 실시
- 프로그램 담당자는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한다.
* 학교 자체 계획 또는 수련기관 및 위탁업체와 협의를 통해 현장체험학습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4) 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 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
-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은 수련 시설 및 위탁업체에 명단과 보호,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통보하여 안전지도 대책을 수립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 현장체험학습 출발 당일 발열 체크 등을 통해 학생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학생, 학부모의 동의하에 체험학습에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음
- 5) 인솔자는 학급당(참여 학생 25명 기준) 2명 이상 확보를 권장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활용한다.(학급당 1명 인솔시 교사가 인솔)
- 인솔자는 인솔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포함하는 총 인원수
- 6)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중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청소년지도사·문화해설사·큐레이터 등 전문 교육인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 인솔자는 교육활동 현장에서 교육내용·안전문제·학생호응도 등을 관찰하고, 안전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응(위탁교육 중 인솔자는 교육현장 이탈 금지)
- 7) 비상시에 대비한 상비약품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이동·체험활동 장소의 각종 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8)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적합한 생활지도 및 학생 안전교육 매뉴얼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이동 장소마다 참여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 학생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합한 생활지도 실시
 - 특히 선박·항공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 탈출 방법 교육
* 비상신호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피난요령, 구명기구 사용법 등을 의무적으로 여객에게 출항 후 1시간 이내 안내(선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업체에서의 안전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솔자는 반드시 이행을 요구해야 함
- 9) 해양 수상 활동, 갯벌 체험, 산행, 캠핑(야영), 전시·공연 관람, 겨울철 야외활동 계획 시 사전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 해양 수상 활동 사전 확인 〉

- ▶ 해양경찰서장, 시·군·구에 등록 업체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적정 배치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 ▶ 학생 교육 시 활용할 수상레저기구(「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등의 등록여부 확인
- ▶ 인증 프로그램 수련활동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 10) 식중독 등 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곳을 선정
 - * 학교장은 사전에 필요시 관할 시·군·구(안전 및 급식위생 담당 부서)에 실시 기간, 장소(급식 장소)를 포함한 일정을 통보하고 위생·안전 점검 결과 조회 공문 요청
 - *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운영으로 소형 일반음식점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시·군·구의 인력 운용상 위생 점검이 어려운 경우 음식 위생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 후 섭취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
 - 동일 원인(동일 음식)으로 추정되는 구토, 복통, 설사 등 유사 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할 경우 치료 조치를 한 후 인솔책임자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11)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 비상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 * 사안 발생 즉시 신고 후 구조작업 실시
- 학교·교사·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할 때 즉시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연락한다.
- 체험학습 시 발생한 사안(고) 인지 즉시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유선 보고하고, 사안보고서를 제출한다.
- 체험학습 사안발생 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와 주관부서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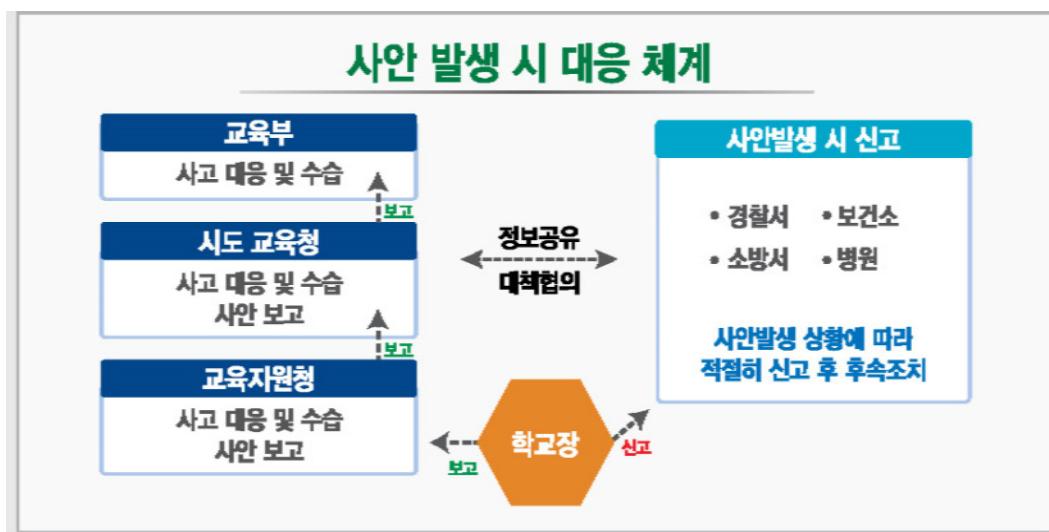
■ 초·중·고 →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및 주관부서)

【융합교육정책과 ☎ 주간 031-820-0685~7, FAX 821-1094, 야간 031-820-0514, 0524】

※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와 주관부서에 동시 보고

※ 국립학교는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련 부서에 동시 보고

※ 야간은 당직 책임자가 보고책임자의 임무 수행



〈 현장체험학습 관련 보고해야 하는 사고 〉

▶ 인사사고

- 사망 및 병원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중상 : 인원수 불문
- 동일 장소에서 같은 활동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체험학습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식중독 및 감염병 의심 증세

-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 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한 경우



현장체험학습 사안 보고서

1. 수신인 :

2. 발신인 :

3. 보고 일시 : 년 월 일 시

4. 기본 사항 ※ 발생 즉시 유선보고 후, 현장체험학습 사안보고서 송부

학교명		전화번호	
체험학습 소재지			
사안 발생 일시		사안명	
사안 발생 교사 또는 학생 정보	〈사고 학생 수가 많을 경우 별도 자료 첨부〉		

5. 사안 개요

가. 사안 내용 (6하 원칙에 의해 기술)
나. 언론보도 내용 (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다. 경찰 조사 내용 (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6. 조치사항 및 향후 사안 수습 계획

--

❖ 10단계 : 정산

10단계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 수익자 부담 경비 집행 내역 공개 • 경비 지급
------	----	---

1) 정산

-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정산한다.
- 현장체험학습 종료 다음날부터 10일(토·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 정산하고 사업 추진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한다.
 ※ 금액이 소액이어서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 기금으로 전출하거나 학급회의를 통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중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집행하도록 함

2) 경비 집행 방법

-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집행한다.
- 현지에서 직접 집행해야 할 경비는 임시 출납원을 임명하여 집행한다.

❖ 11단계 : 결과 활용

11단계	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사후 교육활동(권장) • 자체 평가(만족도 조사 등) 및 차년도 결과 활용
------	-------	--

- 1일형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사후 교육활동 실시(권장)
- 자체 평가 실시 등 차년도 교육계획 반영

III 현장답사 안전점검 항목표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현장답사 안전점검 항목표(예시)

▣ 건물

점검 항목	확인
① 계획한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②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③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④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⑤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내부 시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들을 여러 개의 층으로 분산 배치 가능한가?	
② 학생들이 안전한 휴식을 위하여 방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였는가?	
③ 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	
④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가?	
⑤ 학생 안전을 위한 숙소의 문단속 방범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 안전

점검 항목	확인
① 관할 소방서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하였는가? (필요시 관할 소방서에 화재 예방 점검 요청)	
②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가?	
③ 유리 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작동하고 있는가?	
④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⑤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계 되어 위험하지는 않은가?	
⑥ 화재 위험시설의 통제(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취사도구 등)가 가능한가?	

❖ 생활지도

점검 항목	확인
①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지는 않은가?	
② 방안에 TV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가?	
③ 일반객실과 학생 숙소의 구분 통제가 가능한가?(층별 통제 가능 여부)	
④ 일정 종료 후 학생 및 외부인의 출입을 파악할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졌는가?	
⑤ 숙소 내 편의시설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 위생

점검 항목	확인
① 식당의 위생상태가 청결한가?	
②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청결한가?	
③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깨끗한가?	
④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⑤ 음수대 및 정수기 등의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 식당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② 식단 구성이 학생들의 영양기준과 선호에 적합한가?	
③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④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⑤ 식당은 이동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가?	

❖ 일정 및 코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② 코스 선정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③ 안전교육 등 자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④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⑤ 쇼핑이나 오락시설 등에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2 1일형 현장체험학습 현장답사 안전점검 항목표(예시)

❖ 일정 및 코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② 코스 선정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③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④ 쇼핑이나 오락시설 등에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건물

점검 항목	확인
① 계획한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②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③ 시설의 사용이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④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⑤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내부 시설

점검 항목	확인
① 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	
② 외부의 소음이나 유해 환경으로부터 차단되는가?	
③ 활동장소는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안전

점검 항목	확인
① 관할 소방서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하였는가? (필요시 관할 소방서에 화재 예방 점검 요청)	
②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가?	
③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④ 참여 청소년에게 시작 전 안전교육 실시 계획이 있는가?	
⑤ 비상전달체계 및 안전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⑥ 비상시 안전을 책임질 현지 안전요원 등이 배치되어 있는가?	

IV 자체 점검표 및 안전 컨설팅 방안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자체점검표

교육지원청명	00교육지원청	학교명	한국고등학교
참가 학년	2학년	참가인원	학생 245명, 인솔자 12명
운영 기간	20 .3.12.~3.14.(2박3일)	규모	소규모()팀/대규모()팀
인솔 담당자	교사 홍길동 ***_***_***_*	학교 연락처	031)-000-0000
이동방법	버스 12대, 항공기 3대	장소	제주도 일대/00수련원
체험형태	수학여행형/수련활동형/ 기타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자체기획운영/위탁운영

실시 절차	점검 항목	점검 결과 (○, ×)	비고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였는가?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는가? 체험학습 내용, 교육장소 및 시설점검, 이동 수단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포함한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동학년 학생 국내·국외 분리 또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고액의 체험학습을 계획하지 않았는가? 활성화위원회에서 정한 학부모 동의비율을 계획에 반영하였고 전체 학부모에게 동의율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가? 잔류학생 지도계획에 의거하여 잔류학생을 지도할 계획을 수립하는가? 운영 중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보고 계획을 수립하는가? 		
현장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답사를 2회 실시할 계획이 있는가? 학생들이 사용할 시설 및 코스에 대한 숙박형 체험학습 안전 점검표를 작성하였는가? 학교장은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유사시 대비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 탈출 방법 등에 대한 안전연수 계획이 있는가? 학생들에게 시설 및 이동수단, 프로그램 운영 방법, 공중시설 이용 예절, 유해물품 소지 금지, 성범죄 예방, 기타 안전사고 예방 교육 계획이 있는가? 	1회답사 규정시 1회	
안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안전교육 실시 후, 현장체험학습 기본 정보를 ‘경기교육모아>사전/사후 정보방’에 그 내용을 탑재 하는가? 관리자는 체험학습 실시 전·후에 관련 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연수하는가? 		
안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수송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및 호송협조 요청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하였는가? 당일 운전자와 차량의 조회 결과 회신 사항 및 배차 계획 적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 있는가? 체험학습 위탁 운영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여부와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우수’ 이상을 확인 하는가? 컨설팅 환류 결과를 세부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인가? 		자체기획 해당없음

실시 절차	점검 항목	점검 결과 (○, ×)	비고
계약	● 소규모 체험학습에 대한 매뉴얼의 계약 방법을 숙지하고 계약하는가?		
	● 학생 및 인솔자의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이 있는가?		
	● 추정가격별 계약방법을 준수하고 계약 시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며 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및 책임 소재와 범위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하는가?		
	● 차량 계약 시 차량 연식, 보험 가입, 차량 상태, 운전자 자격, 음주금지 조항 및 보상 조항을 명시하고 확인하는가?		
	●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고 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계약 상대자를 대표자로 하고 무허가 중간알선업자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금지하는가?		
	● 인솔자의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은 학교운영비에서 업체로 일괄 송금하는가?		
체험 학습 운영	● 체험학습 종료시까지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 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는가?		
	● 적정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하는가?(교사 1명 포함)		
	● 숙박지, 체험학습장 도착시 대피로 안내 등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가?		
	●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시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 중 특별 보호 대상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할 계획을 수립하는가?		
식중독 예방	● 학교장은 해당 식당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를 사전에 확인하는가?		
	● 단체 급식시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고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는 계획을 수립하는가?		

종합의견 :

02

현장체험학습별 안전조치 안내

20

점검자 : 담당부장	성명 :	(인)
점검자 : 행정실장	성명 :	(인)
점검자 : 교감	성명 :	(인)
확인자 : 교장	성명 :	(인)

※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대규모 수련활동일 경우 세부계획서와 함께 교육지원청에 제출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의 경우는 컨설팅 대상이나 대규모 수련활동은 컨설팅 대상 아님)

※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 사인은 생략할 수 있음

2 1일형 현장체험학습 자체점검표

교육지원청명	00교육지원청	학교명	한국초등학교
참가 학년	4학년	참가인원	학생 **명, 인솔자 **명
운영일	20**.*.*.(금)	체험영역	교과/창체/기타() 예)교과체험(자유학기제)
인솔 담당자	교사 홍길동 ***_***_***	학교 연락처	031)-000-0000
이동방법	버스 **대	장소	용인 000목장

실시 절차	점검 항목	점검 결과 (○, ×)	비고
계획 수립	● 프로그램, 장소, 시기에 대해 학부모 동의와 학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 하였는가?(교육계획 설문 조사 등 반영)		
	● 잔류학생 지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체험학습 내용, 교육장소 및 시설점검, 이동 수단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포함한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주제 및 장소 등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는가?		
	● 운영 중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보고 계획을 수립하는가?		
현장 답사	● 현장 답사를 1회 실시 하였는가? (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경기형 체험학습프로그램 인증제'를 이용할 경우 현장답사 생략가능)		
	● 답사시 학생들이 사용할 시설 및 코스에 대한 1일형 체험학습 안전 점검표를 작성하였는가?		
안전 교육	● 학교장은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유사시 대비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안전연수 계획이 있는가?		
	● 학생들에게 시설 및 이동수단, 프로그램 운영 방법, 공중시설 이용 예절, 유해물품 소지 금지, 성범죄 예방, 기타 안전사고 예방 교육 계획이 있는가?		
	● 학생 안전교육 실시 후 현장체험학습 기본 정보를 '경기교육모아>사전/사후 정보방'에 그 내용을 탑재 하는가?		
	● 관리자는 체험학습 실시 전·후에 관련 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연수하는가?		
안전 점검	● 당일 음주 감지를 위한 음주감지기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하는가?		
	● 당일 운전자와 차량의 조회 결과 회신 사항 및 배차 계획 적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 있는가?		
	● 운영 중 사고 발생시 대응 방법 및 보고 계획을 수립하는가?		
	●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 중 특별 보호 대상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할 계획을 수립하는가?		

실시 절차	점검 항목	점검 결과 (○, ×)	비고
계약	● 추정가격별 계약방법을 준수하고 계약 시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며 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및 책임 소재와 범위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하는가?		
	● 차량 계약 시 차량 연식, 보험 가입, 차량 상태, 운전자 자격, 음주금지 조항 및 보상 조항을 명시하고 확인하는가?		
	●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고 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계약 상대자를 대표자로 하고 무허가 중간알선업자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금지하는가?		
	● 인솔자의 교통비, 입장비 등은 학교운영비에서 업체로 일괄 송금하는가?		
	● 고위험 활동인 경우 학생 및 인솔자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는가?		
체험 학습 운영	● 체험학습 종료시까지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 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는가?		
	● 학교 여건에 따라 적정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하는가?(교사 1명 포함)		
	● 현장체험학습 시 지도교사가 입장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하는가? (위탁교육, 자유시간 포함)		
	● 외부 위탁에 의한 프로그램인 경우 청소년수련활동인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인증여부 확인 프로그램 안내)		자체기획 운영시 해당없음
식중독 예방	● 학교장은 해당 식당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를 사전에 확인하는가?		
	● 단체 급식시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고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단체 급식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없음

종합의견 :

20 . . .

점검자 : 담당부장 성명 : (인)
 점검자 : 행정실장 성명 : (인)
 점검자 : 교감 성명 : (인)
 확인자 : 교장 성명 : (인)

※ 1일형 체험학습 자체점검표는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지 않음(세부계획서 반영)

※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 사인은 생략할 수 있음

3 국외 현장체험학습 자체점검표

교육지원청명	00교육지원청	학교명	한국고등학교
참가 학년	3학년	참가인원	학생 245명, 교사 12명
기간	20**.3.12.~3.15.(3박4일)	참가형태	국외체험학습/국제교류학습 기타()
인솔 담당자	교사 흥길동 ***_***_***	학교 연락처	031)-000-0000
이동방법	여객기, 버스 12대, 선박 1대	장소	오사카 일대

실시 절차	점검 항목	점검 결과 (○, ×)	비고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 체험학습 계획에 프로그램 내용, 교육장소 및 시설, 이동, 안전사고예방 등 예상되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국외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은 학년 전체 학부모의 90%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였는가? 소규모 3학급 이하 또는 학생수 100명 미만으로 계획하였는가? 국외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국제 교류학습 등이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가? 운영 중 사고 발생시 대응 방법 및 보고 계획을 수립하는가? 잔류학생을 지도할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현장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답사를 1회 이상 실시하였는가?(현장답사 시 작성한 체크리스트 첨부) (학교 실제인솔자 답사가 원칙이나 다만, 매년 같은 학교간 교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 답사가 어려다고 판단된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여행사 관계자, 국외 교류 학습 대상 학교 관계자 등의 현장답사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안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학습 종료시까지 학생, 교사, 현지가이드, 험스테이 가정, 현지 대사관·영사관, 현지 학교 및 국내 학교관계자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는가? 교사 1명 이상 적정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하는가? (인솔자는 학급당 2명 이상 또는 25명 기준 2명 이상 확보하여 운영 권장) 학생 및 인솔자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는가? 현지 국가에서의 안전대책이 수립되었는가? (대사관·영사관, 한인회, 현지 경찰·교육기관·여행사 연계 방안 등)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 중 특별 보호 대상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가? 여권분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정가격별 계약방법을 준수하고 계약 시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며 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및 책임 소재와 범위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하는가? 차량 계약 시 차량 연식, 보험 가입, 차량 상태, 운전자 자격, 음주금지 조항 및 보상 조항을 명시하고 확인하는가?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고 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계약 상대자를 대표자로 하고 무허가 중간알선업자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금지하는가? 인솔자의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은 학교운영비에서 업체로 일괄 송금하는가? 		

실시 절차	점검 항목	점검 결과 (○, ×)	비고
안전 교육	체험학습과 관련된 교육자료·현장정보 등을 학생들에게 사전교육하고 학부모 홍보를 통해 가정과 연계 지도하는가?		
	학교장은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가급적 안전전문가에 의한 유사시 대비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안전연수를 실시하는가?		
	학생들에게 현지 언어 및 상대국 문화에 대한 교육, 시설 및 차량, 공중시설 이용 예절, 유해물품 소지 금지, 성범죄 예방, 기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가?		
	항공기, 선박 등 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반입금지물품, 공항 집결지안내, 좌석번호 사전안내, 출입국 수속안내, 여권점검 및 분실시 대책 마련 등)		
	현지식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가?		
	관리자는 체험학습 실시 전 · 후에 관련 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연수하는가?		
체험학습 운영	체험학습 종료시까지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 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는가?		
	출발당일 학생수송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및 호송협조 요청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하는가?		
	숙박지, 체험학습장 도착시 대피로 안내 등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가?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시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소규모는 권장
학생 관리	물건 구입 시 자신의 소지품 관리 계획이 있는가?		
	상시 학생들의 동선과 위치 파악 계획이 있는가?		
	쇼핑이나 단순한 놀이 등의 장소에 학생들이 방지되지는 않는가?		
	호텔 등 숙소 이용에 대한 사전 교육 및 도착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기타	오리엔테이션 내용에 현지 학교의 안전대책 교육을 강구하였는가? (비상대피로, 비상구, 소화기 위치 등)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학교 관계자, 현지가이드)를 홈스테이 가정에 제공하였는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인솔교사는 학생의 안전여부를 점검할 계획이 있는가?		국제교류 학습시 이용

종합의견 :

20 . . .

점검자 : 담당부장 성명 : (인)

점검자 : 행정실장 성명 : (인)

점검자 : 교감 성명 : (인)

확인자 : 교장 성명 : (인)

※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 사인은 생략할 수 있음

국외 현장체험학습 신고서

학교명 : 학교 (전화 :) 20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박 일)					
참가 대상	대상학년	대상 학생수	참가자수	불참 학생수	참가율	
담당자	인솔 총책임	실무 책임	회계 담당	인솔 교직원수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목적지 및 주요 경유지						
출발· 도착시간	○ 출발일시, 출발공항, 비행편명 : ○ 도착일시, 도착공항, 비행편명 :		주관 여행사	()여행사 www.		
숙박 계획	숙박 일	제 1일	제 2 일	제 3 일	제 4 일	비고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방 수					
	실당인원					
1인당 경비		교사경비 학교회계 반영여부		현장답사 실시여부		
숙박비						
식비						
기타(운임등)						

※ 소규모 분산 실시의 경우 행선지 별로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

※ '목적지 및 주요 경유지'에는 목적지뿐만 아니라 주요 경유지는 모두 기재

※ 실시 전 보고 서식(기본계획에 같이 포함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

※ 국외 체험학습 현장답사는 1회 이상 실제 인솔자를 중심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년 같은 학교간 교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 답사가 어려다고 판단된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여행사 관계자, 국외 교류학습 대상 학교 관계자 등의 현장답사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국외 체험학습 유의사항

[국외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 참여인원 규모에 관계없이 세부계획서(국외 체험학습신고서포함) 및 국외체험학습 자체점검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컨설팅 후 실시한다.
- 체험학습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요원의 배치를 권장하고 인솔교사도 가급적 안전요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 국외 수학여행 현장답사는 1회 이상 실제 인솔자를 중심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방문국 현지 대사관, 영사관, 여행사 등을 통하여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외 수학여행은 학부모 동의 찬성율이 90% 이상일 경우에만 추진이 가능하다.

[국외 교류학습]

- 국제 교류학습, 해외 자매학교 방문, 해외 기업체대학 탐방, 문화체험 등 운영
 - * 학교가 주관하여 학생들이 국외 출국하는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 참가 인원 수와 상관없이 교육지원청의 관련 부서와 체험학습 담당자에게 세부계획서(국외체험학습신고서 포함) 및 국외체험학습 자체점검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 하여 컨설팅단의 컨설팅 후 실시한다.
- 인솔교사는 가급적 안전요원 연수를 이수하도록 한다.
- 방문국 현지 대사관, 영사관, 여행사 등을 통하여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담당 교사와 학생 인솔자 및 준비된 일정을 진행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방문 중 차질이 빚어지거나 자매학교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 국외 체험학습 현장답사는 1회 이상 실제 인솔자를 중심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년 같은 학교 간 교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 담사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여행사 관계자, 국외 교류학습 대상 학교 관계자 등의 현장답사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4 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컨설팅 방안

가. 현장체험학습 컨설팅 방침

- 1) 컨설팅은 학교를 지원하는 활동이며 현장체험학습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다.
- 2) 컨설팅 위원은 결과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 3) 학교는 컨설팅 결과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컨설팅 활동 내용은 본 운영매뉴얼을 기본 지침으로 한다.

나. 컨설턴트 구성

- 교육지원청별 분야별 전문가를 5인 이상의 적정 인원으로 구성
(장학관, 교장, 교감, 장학사, 행정실장, 주무관, 교사 등 다양하게 구성함)

다. 컨설팅 대상

- 1) 대규모(4학급 이상 그리고 학생 수 100명 이상)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 국외 체험학습을 계획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대규모 수련활동의 경우 필요시 실시)
- 2) 소규모(3학급 이하 또는 참가 학생 100명 미만)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 학교는 학교에서 희망시 컨설팅을 실시한다.

라. 컨설팅 방법

- 1) 컨설팅 대상학교를 그룹핑하여 컨설턴트 지정 및 필요 시 유선 컨설팅 등 상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2) 대규모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 및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성을 검토한다.
- 3) 운영지침 및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학교의 세부계획서 및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실시한다.

마. 컨설팅 일정

- 1) 교육지원청의 별도 계획에 의거하여 일정을 협의하여 실시함(일괄 또는 수시 컨설팅)
- 2)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 세부계획서 및 자체점검표를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전 학교장 결재 후 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바. 컨설팅 결과 환류

- 1) 안전대책 등이 미흡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시행 계획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 2) 컨설팅 결과는 접수 후 2주 이내 해당 학교에 환류 한다.(시한이 촉박한 경우 환류 시기를 앞당겨 환류한다.)
- 3) 컨설팅 대상 학교는 최종컨설팅 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시행 전까지 컨설팅 권고내용을 세부계획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 4) 필요시 컨설팅단은 세부계획서를 재요구하여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MEMO

02

현장체험학습 스텝 안전조치 안내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 I .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규
- II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및 신고제
- III . 안전한 체험학습 Q&A
- IV . 각종 서식

2024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03

부록

부록

I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

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 2015. 3. 1.] [경기도조례 제4806호, 2014. 11. 10., 제정]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031-820-068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 "현장답사"란 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안전교육"이란 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화재, 풍수해 등의 모든 재해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준비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
-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학생안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 학생안전향상에 대한 지원 방안
- 안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
- 안전교육 운영지원 방안
- 학생안전 관리·감독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체험학습에 있어서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체험학습 기본계획)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체험학습 학생안전대책

2. 체험학습 안전교육실시

3. 그 밖에 학교장이 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대하여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다.

④ 학교장은 4학급 이상 또는 학생 수 100명 이상 단위로 실시되는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심의·자문사항을 기초로 체험학습 실시 전에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제5조(현장답사)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 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학부모의 참여)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계획 수립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8조(체험학습 지도·감독) 교육감은 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임) 교육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806호, 2014.11.10>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1.4.] [경기도교육규칙 제903호, 2021.11.4, 타법개정]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031-820-06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안전책임자”란 여행인솔자, 차량운전자, 철도 기관사 및 승무원, 선박의 선장 및 선원, 항공기 기장 및 승무원, 현장체험학습 시설의 대표자 및 그 소속 직원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고시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자율활동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다.

제4조(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1. 소규모 주제별 체험학습 형태로 운영
 2. 버스 등 차량의 일렬운행 방식보다는 단독 또는 소수 차량단위로 운행
 3.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등 특정지역 지향
 4.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5.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 ② 학교장은 학교가 경비 전액을 부담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도 참가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 ③ 학교장은 체험학습에 불참하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조례 제9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4개 학급 이상 또는 학생 수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 사전답사) 학교장은 일일형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시설·교통수단의 비상구 등이 표시된 배치도를 사전에 교육하고, 수상활동·산행활동·공연관람 등 활동별 체험학습에서 예상되는 교통·화재 사고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 또는 토론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7조(교통 및 시설안전) ① 학교장은 교통수단과 시설의 사용 전에 긴급상황을 대비한 안전장구의 위치 및 사전 안전교육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인솔책임자는 체험학습 교육자료와 긴급상황을 대비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각 차량마다 “학생 현장체험학습” 표지를 부착한다.

제8조(인솔자 등)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에 따른 인솔책임자, 인솔·지도교사 등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임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인솔책임자는 체험학습 중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안전책임자, 인솔·지도교사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인솔·지도교사는 교육목적에 맞게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신체가 허약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확인·관리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④ 인솔·지도교사는 차량으로 이동 시 운전자 가까이에 탑승하여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수칙) 인솔·지도교사는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그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할 것
2. 인솔책임자, 인솔·지도교사, 안전책임자, 프로그램 진행자 등의 안전지도 사항 준수할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인솔·지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할 것
4.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인솔·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을 것
5.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또는 시설 등 접근 금지
6. 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제10조(사고처리) ① 인솔 책임자와 인솔·지도교사는 체험학습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처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학교장과 소방서·경찰서 등에 신속히 구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긴급상황에 따른 수습 대책을 강구하고, 자체 없이 관할 교육장에게 그 발생 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체험학습 지도·감독) 조례 제9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육장은 관할 각급 학교의 체험학습 계획·시행 단계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점을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시행의 보류 또는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744호, 2015.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청소년 기본법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제4장 청소년시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21조(청소년지도사)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장 청소년지도자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별표 5]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 청소년수련원 :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 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유스호스텔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9조, 제9조의2~제9조의7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요건)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8조의2(안전교육)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안전·위생점검)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 제5조(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 제7조(수련시설의 등록)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별표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14개항)
- 제11조(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절차 등) 제12조(수련시설의 이용)
- 제13조(보험가입)
 - [별표2]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 [별표3] (후유장애 구분 및 보험금액)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 제19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제23조(수련활동 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 제2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등)
- 제29조(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서류 등)
- 제5조(등록신청서류 등)
-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별표3] 제8조의2(수련시설의 안전점검)[별표4]
- 제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별표5]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 제14조(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아. 계약 관련 법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교육부령)
- ▶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교육부령)
-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경기도교육청)
-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자. 전세버스 관련 법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4항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전종사자의 준수 사항)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16조2항 2호, 3호(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위 법률 이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적용받음

2 현장체험학습 관련 감사 사례3)

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절차 미준수

사례 1) ○○중학교에서는 $20 \times \times \sim 20 \times \times$ 학년도 1학기(4년간)까지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단순히 학년별 체험학습 일정만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받고, 체험학습 출발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함

사례 2) ○○고등학교에서는 $20 \times \times$ 학년도 1, 2학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면서 현장체험학습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고, ○○중학교는 테마형·1일형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음

관련자 주의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학습 추진 시 현장체험학습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수학여행, 수련활동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 대해 검토 및 자문을 받은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근거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동법 시행규칙〉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융합교육정책과)

3) 경기도교육청 감사사례집(2022.12)에 수록된 현장체험학습 관련 내용을 재편집한 내용임.

나. 국외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적정

사례 3) ○○고등학교는 학교발전기금으로 국외체험연수를 실시하면서 교육지원청의 사전컨설팅을 받지 않았으며, 인솔교사가 여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여행경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학생에게 지급 후 학생이 여행사에 직접 입금하도록 하여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함

관련자 주의

관련 규정	-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계획 수립단계부터 교육지원청 컨설팅을 실시하고, 여행경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집행·정산하여야 한다.
근거 자료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융합교육정책과)

다. 현장체험학습 차량 안전관리 소홀

사례 4) ○○중학교에서는 20××~20\$ \$ 학년도(3년간) 현장체험학습 차량 총 118대를 계약하면서 계약당사자 보유 차량 외 타 운송업체 차량 34대를 승낙하였고, 정기검사 유효일이 지난 차량 49대(타 운송업체 차량 포함)를 계약체결 및 운행함

관련자 주의

관련 규정	- 현장체험학습 차량 계약 시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는 여객운송사업자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유효기간 등재필 한 경우) 대체 가능
근거 자료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융합교육정책과)

라. 현장체험학습 여행자 보험 가입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5) ○○초등학교에서는 '20××년도 학년별 현장 체험학습'을 시행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솔자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결정하고, 여행자보험 가입을 포함하여 현장 학습계획 수립 및 참가비 징수를 하였음에도 일부 학생(63명)에 대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후에 환불함

관련자 주의

관련 규정	- (2019학년 이후) 국외 및 고위험 활동[수상, 항공, 산악, 장기 도보 등]이 있는 숙박형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인솔자 여행자 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 하며, 그 외 숙박형·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 가입한다. ※ (2018학년 이전) 숙박형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 중 고위험 활동(수상, 항공, 산악, 장기 도보 등) 시 학생·인솔자 여행자 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 하며,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 가입한다
근거 자료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융합교육정책과)

마. 현장체험학습 정산 소홀 및 공개내역 미공개

사례 6) ○○중학교에서는 $20 \times x \sim 20 \$$ 학년도(3년간)에 총 24건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정산 처리 및 공개 없이 처리하였고, 그중 8건에 대해서는 인솔교사의 교통비 총 986,558원을 버스비에 편입하지 않고 학생의 수익자부담경비로 처리함

✓ 관련자 주의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하고,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 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수익자부담사업의 추진 시 인솔 교직원의 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인솔 교직원의 여비를 수익자부담경비로 충당하지 않도록 한다.
근거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융합교육정책과)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립학교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바. 수익자부담경비 학교회계 미편입 및 직접 사용

사례 7) ○○중학교는 학년별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면서 여행자보험료만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나머지 식비 및 체험비는 학교회계 수입 및 지출 절차 등 없이 학생들이 직접 납부하게 함

✓ 관련자 주의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주거래 계좌를 개설·이용 하여야 한다. - 수익자부담수입은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활동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학교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반드시 편입하여야 한다.
근거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공립 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II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및 신고제

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안내

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요

1 개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 인증제도

2 인증대상 : 청소년(만 9세~24세)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

▶ 인증을 필히 받아야하는 대상

-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활동, 위험도가 높은 활동(수상, 산악, 장기도보, 위험기구 사용, 사고대비 물질사용, 항공활동)

▶ 인증신청 제외대상

- 단순 체험(견학)활동, 단순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 내지 강좌, 운영시간 최소기준 미 충족 활동,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 등

3 인증기준

- 활동유형⁴⁾ :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 인증기준 : 공통 - 3개 영역, 6개 기준 / 개별 - 2개 영역, 5개 기준 / 특별 - 2개 영역, 2개 기준

4 주요내용

- 청소년의 발달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여부 확인
-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특별기준 마련 및 이행여부 확인 실시
 - * 인증을 받아야하는 대상 표기 및 특별기준 제정(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14.7.22.적용)
 - * 전문심사원의 현장확인 및 수시점검 진행 : 안전고려활동 및 일정규모 이상의 프로그램, 인증프로그램 최초 운영기관 등
 - * 활동장소의 정기적 안전점검 여부 확인 및 지도자·참가자 안전교육 매회 실시
- 청소년 활동유형 및 내용에 따른 적절한 지도자 배치
 - * 안전전문인력(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2014.7.22.시행) 및 전문지도자·유자격자 배치
-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행정처분 진행(인증취소, 과태료 부과 등)

4) 활동유형

활동유형	내 용
기 본 형	1일 3시간 이상 혹은 1일 2시간 이상 2회기 이상에 걸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활동
숙 박 형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이 동 형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나. 인증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절차

1 인증프로그램 검색(확인) 및 선정

- 프로그램 검색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youth.go.kr)
- 일정협의 및 인증사항 확인 : 운영기관 직접 확인(프로그램 변경·추가 불가)
 - *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인증서와 활동기록 발급여부 확인
 - * 현 제도는 프로그램 인증으로 기관 소유의 인증프로그램인지 확인
 -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확인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www.youth.go.kr)

2 인증프로그램 선정 및 활동 참가

- 인증정보시스템에서 참여일자(실시일자) 승인사항 확인 후 활동 참가
 - * 협의된 내용과 인증정보시스템 승인사항이 다를 경우 진위여부 확인 필요
- 참여자 안전관리 및 참여기록 등재를 위한 참여 학생 명단 운영기관 제출
 - * 청소년의 참여기록은 국가가 관리·제공(여성가족부 장관명의)
- 인증수련활동 참여 중 인증사항과 다를 경우 사실여부 확인 및 제보 가능

3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 참여기록 확인서 출력(온라인, 회원가입 후 참가자 개별 출력)
 - * 실시간 발급(활동종료 20일 이후 출력 가능), 단체발급 필요 시 진흥원 문의
- 포트폴리오 참가자 선택 작성 및 발급

다. 인증프로그램 활용에 따른 안내

1 현장체험학습 활동 선정 시 인증관련 확인사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인증대상은 기관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기관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며, 프로그램 선정 시 인증여부를 확인해야 함
- 인증프로그램 선정 시, 활동실시일 14일 이전까지 계약이 완료되어야 함
 - * 인증프로그램은 실시 14일 이전까지 실시정보 및 주요내용의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실시일자 미 승인 시(활동실시 14일 이전 통보), 인증프로그램으로 인정이 불가함
 - * 확인방법 : 인증정보시스템(www.youth.go.kr), 프로그램 검색 → 월별 인증수련활동

2 인증프로그램 선정완료 후 학교의 확인사항과 역할

- 활동 예정 프로그램과 인증서에 명기된 프로그램의 동일여부 확인(활동명, 주요내용)
- 참여기록 등재를 위한 참가자 인적사항 제공(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7조, 시행령 23조)
 - * 인증프로그램 사용 시 참가자의 참여기록은 의무적으로 등록·발급 되어야 함
 - * 활동기록 등재요건 미 충족 시 인증프로그램 사용 불가
 - * 활동기록 등재를 위한 등재요건(제공정보) : 참가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3 그 외 중요 확인사항

- 인증프로그램은 국가 인증사항으로 일정 및 시간, 프로그램내용의 조정이 불가
- 인증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전 일정(모집에서 해산까지)을 심사심의한 것이므로, 타 프로그램을 추가 등록할 수 없음(학교 명사 특강, 특별 프로그램 추가 등)

| 국가 인증수련활동 기록확인서 관련 조항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 ③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자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3조(수련활동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단체는 법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참여한 수련활동에 관하여 개별 청소년의 인적사항, 활동참여 일자시간, 장소, 주관기관, 내용, 참여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활동진흥원 : 법 제 6조제 1항에 따른 활동진흥원의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참고 1 인증제 운영절차



- ▶ 자세한 사항 확인 및 문의(불편/건의사항)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운영부 02-330-2852~9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www.youth.go.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www.kywa.or.kr

참고 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및 인증마크

[별지 제17호 서식] – (제36조 관련)

[필급번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input type="checkbox"/> 인증번호 : _____ <input type="checkbox"/> 운영기관명 : _____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_____ <input type="checkbox"/> 활동명 : _____ <input type="checkbox"/> 주요활동장소 : _____ <input type="checkbox"/> 인증기간 : _____ <input type="checkbox"/> 참여대상 : _____ <input type="checkbox"/> 참여인원 : _____	
<small>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증명합니다.</small>	
년 월 일	
 <small>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small>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인증마크

(인증번호, 프로그램명, 참가대상, 운영기관명과 함께 사용)

참고 3 인증수련활동 검색방법

① 프로그램 검색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청소년

내게 맞는 활동 찾기 자유하게 활동찾기 수능후 활동찾기 내가 다녀온 활동하기

내게 맞는 활동 찾기

X

전체활동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공기관, 민간시설의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e-Teenager websit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청소년활동검색', '활동사업안내', '복지보호안내', '고객센터', and '공지/뉴스'. Below the navigation is a search bar with dropdown menus for '상기대상' (전체), '지역선택' (전체), '연령선택' (연령선택), '활동시기' (2015-09-18), and '기워드검색' (with a note about entering keywords like '영재', '인증', '선교', etc.). There are also buttons for '기관유형' (전체), '활동분류' (전체), and '추가선택 +'. A large search button labeled '검색' is at the bottom right. Below the search area, there are tabs for '등록순', '인기순', '참가비순', '활동일순', and '마감일순'. To the right of these tabs are buttons for '리스트', '이미지', and '8개씩 보기'.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grid of program cards. Each card includes a thumbnail image, the program name, a brief description, and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date, location, age group, participation fees, and contact details. For example, one card for '덕유산 캠프 - 가슴을 열어라' shows a group photo and a map of South Korea with a red box highlighting a location. Another card for '2015 무안군청소년수련관 겨...' shows children in winter gear. The bottom of the page has a navigation bar with arrows for page navigation.

03

부록

② 프로그램 정보 확인 : 인증번호, 참가대상, 모집방법, 일정, 장소, 담당자, 기관정보 및 위치, 활동사진, 지자체 신고여부 등

- 해당기관을 통해 관련 증빙자료 추가열람 가능

내게 맞는 활동 찾기

HOME > 청소년활동검색 > 내게 맞는 활동 찾기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

[전로탐구] 웅(DNA)에서 꿈(RNA)으로_고등학교

분류 | 인증시스템 연계 | 인원 및 연령 | 300명 (2)

지역 | 전라북도 김제시 | 참가비 | 105,600

활동일시 | 2016-11-14 ~ 16 외 2건 열기 | 오집기간 | 개별문의

참가대상 | 개인/단체모집 | 차량운행 | *

인증번호 | 제 4692 호 바로가기 | 신고번호 | 2016-30의 3건 바로가기

인증유효기간 | 2019-06-23까지 | 속박여부 | 속박형

반복여부 | *

기관명 |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 전화번호 | 063-540-5600

담당자 | 선택 | 담당자이메일 | 선택

관련사이트 | nyac.or.kr/ | 팩스번호 | 063-540-5603

첨부파일 |

* 해당 정보는 운영기관에서 직접 등록하였으며 문의 및 신청은 기관전화번호를 참고하세요.

후기등록하기 ★ 기관찜하기 ★ 활동찜하기

활동정보 기관정보 연세

활동목표 및 상세내용

'웅(DNA)에서 꿈(RNA)으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분야, 즉 예술, 농업, 생명과학, 그리고 생명공학 체험프로그램으로 청소년에게 평소 접하지 못했던 진로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갖는 진로갈등 및 진로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청소년의 미래기대나 진로의식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청소년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관을 갖고 미래를 결정하여 청소년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여 청소년은 진로탐색을 통해 자신만의 DNA를 만들고 그 삭(웅)을 퇴워서 자신만의 꿈(RNA)에 다가서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 예는 마당(안전교육 및 안증과 생활 안내) 및 마음열기,
- 진로의식 향상 프로그램(꿈을 이룬 사람들, 직업과 나),
- 선택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공통: 생명과 미래(농업생명체험관)
농업: 생명을 품은 씨앗
과학: 인류의 약 아스파린
예술: 생명을 그리는 이야기(수호)
자랑선 품년드스(댄스)
우리 직업 있어요(상황극)
- 생명들의 길(공동체 활동)
- 생명들의 와일(에크리어이션)
- 청소년 공감마이팅(보이는 청소년 라디오)
- 맛있는 마당(잼프 마무리 및 설문조사)

활동장 위치

등록된 위치정보가 없습니다.

기관정보

기관명 |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National Youth Agriculture and Life Center

기관소개 | 프로그램은 가족이나 동아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선 여행자(영업일 1회2일), 청소년 대상의 '백화점과 함께 가는 영업장'이며, 숙박 과정자(박막일), 청소년지도자나 교사 대상의 '농업영어교사 대회' 등 4개 과정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에서는 전시관과 허브관을 통한 청소년들의 생명을 연구하는 과학실험과 농업생산 기술을 딜럭스 허브관으로서 가다가 자구생각과의 일루미네이션, 아름다운 날씨를 느끼며, 자연사들의 아름다움을 기우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들을입니다. 현재 보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농업영어는 인류 생존의 시민으로 술을 향상하고 식탁도 제공하여, 우리가 먹을 먹고 있는 음식을 바로 우리에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나와 한 품을 끼으면서 일상 속에서 생활·사회를 살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앞으로 젊은 꿈을 꾸는 청소년들은 농업영어 체험센터가 되어 청소년 여러분에게 청소년 영어 체험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는 세계의 모든 청소년의 초대하고 운영되는 생장을 이루기 기회이며, 즐거운 농업영어 체험센터일 것입니다.

사업자번호 | 403-82-14276

전화번호 | 063-540-5600 | 기관대 | 청소년수련원

팩스번호 | 063-540-5603 | 대표자성명 | 최희우

홈페이지 | nyac.or.kr/

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 안내

가. 신고제 개요

1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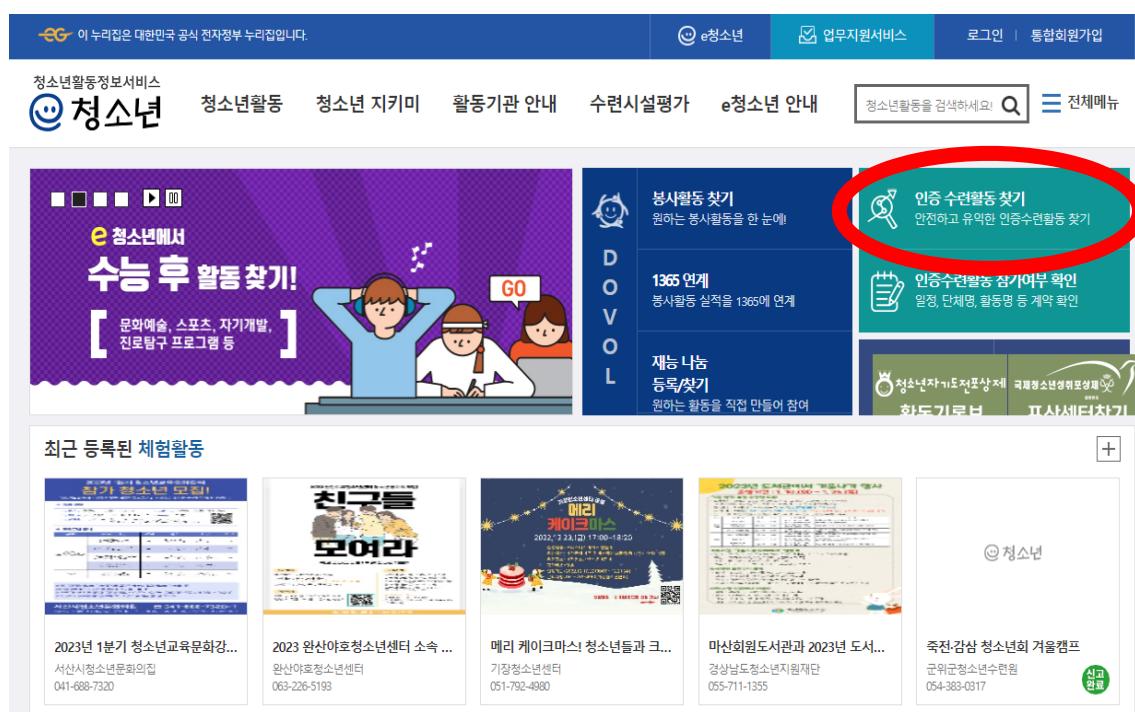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2 목적

-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자가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동 운영 전반의 안전을 점검
 - 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지도자의 참여 방지, 보험 기입을 의무화하여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신고 수리된 수련활동 정보를 공개하여 청소년, 교사 등 모든 사람이 쉽게 수련활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선택과 참여 결정에 도움
- 3 신고대상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여 청소년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인 경우

나. 신고수리된 수련활동 정보 확인하기

1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의 [인증 수련활동찾기]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Youth Activity Information Service (www.youth.go.kr).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e-청소년 (e-Teen), 업무지원서비스 (Business Support Services), 로그인 (Login), and 통합회원가입 (Unified Membership Registration).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search bar with the placeholder "청소년활동을 검색하세요!" and a magnifying glass icon. To the right of the search bar is a "전체메뉴" (Full Menu) icon.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banner for "e 청소년에서 수능 후 활동 찾기!" (Find activities after the college entrance exam). To the right of the banner, there is a section titled "봉사활동 찾기" (Find volunteer activities) with a sub-section "인증 수련활동 찾기" (Search for certified activities). This section is circled in red. Below this, there is a section titled "인증수련활동 참가여부 확인" (Check participation in certified activities) with a sub-section "일정, 단체명, 활동명 등 계약 확인" (Check schedule, group name, activity name, etc.).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section titled "최근 등록된 체험활동" (Recently registered experience activities) displaying several thumbnail images of activity posters.

2 청소년활동 찾기에서 [인증프로그램 체크 표시 확인 후] 검색

3 검색된 프로그램에서 [인증번호] 확인

프로그램명	인증번호	기관명	모집기간	활동일	인원	등록일	인증기간
창의톡톡 도예공방	5795A05A-11026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개별문의	2022-12-31	10명	2022-12-14	2022-12-07~2025-12-06
『언(UN)』플러그드 코딩	5795B02A-11024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2022-12-12 ~ 21	2022-12-26 ~ 29	10명	2022-12-14	2022-12-07~2025-12-06
조코봇	5445A02A-11061	하남시청소년수련관	개별문의	2022-12-20	10명	2022-12-14	2022-12-07~2026-12-06
찾아가는 하루체험 Art&Job 습디자이너	0638A08C-11039	광주광역시 화정청소년문화의집	개별문의	2022-12-28	15명	2022-12-07	2022-12-07~2026-12-06

4 프로그램명 클릭 후 세부 내용 확인

- 참여하고자하는 프로그램명을 클릭하여 주요 프로그램 내용, 인증수련활동 여부, 보험 가입 사항, 지도자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

③ 체험학습 안심 점검 서비스 안내

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적극 활용한다.

- 제주도, 경주시, 전라북도, 전남 신안군 등의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를 활용한다.

나. 전라북도 수학여행단 지원 사업

- 수학여행단이 전라북도에 진입할 때부터 진출할 때까지 모든 일정을 동행하는 전라북도 투어매니저 지원

* 문의 : 전라북도 수학여행 콜센터(☎ 063-232-0226)

다. 제주도 안심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서비스

- 제주도를 방문하는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학생들이 사용하는 숙소 및 이벤트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실시 · 결과 회신[신청서식 참고]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064-710-3933)

-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단 이용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실시

라. 경주 안심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서비스 안내

- 수학여행단(학교)과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제도 운영

- 서비스 종류 : 숙박시설 및 음식점 안전점검 추진한 사항, 교통안전

* (숙박시설) 시설점검, 소방, 전기, 가스점검

* (음식점) 위생점검

* (관광버스) 숙박단지에서 수학여행단 운전기사에 대하여 투어 시작전 인솔자가 직접 음주 감지·측정

- 전자문서 경로지정 : 경상북도 ⇒ 경주시 ⇒ 관광컨벤션과

* 수신처를 “관광컨벤션과”로 지정

* 유관 기관 및 관련 부서의 협조에 따라 안전 점검 추진사항을 통보해 주고 있으며, 수학여행단이 갈 곳(숙박시설, 음식점)만 신청하면 점검결과는 수학여행 15일전까지 숙박시설, 음식점만 통보

- 기타사항

* 문의 : 경주시 관광컨벤션과 (☎ 054-779-6832)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신청서

제주도청 관광총괄과

신청학교	(학교명)			
	(주 소)			
	업무 담당자		연락처	000-000-0000(사) 000-0000-0000(핸)
	(여행일정)			
<input type="radio"/> 수학여행 기간 : <input type="radio"/> 제주도착 시간/장소 : <input type="radio"/> 방문인원 : 총 명(인솔자 명, 학생 명)				
점검요청 시 설	1. (숙박시설) ○○○ 리조트 - 연락처 :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1(이도일동)			
	2. (음식점) ○○리조트 내 식당 - 연락처 :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1(이도일동)			
	3. (음식점) ○○식당 - 연락처 :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1(이도일동)			
	시설물 안전점검 후 지적사항 보완 일정 등을 감안하여 수학여행 방문 50일 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신청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 학 교 장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신청서

경주시청 관광컨벤션과

신청학교	(학교명) ○○고등학교			
	(주 소) 경북 경주시 ○○길 ○○(○○동)			
	업무 담당자	○ ○ ○	연락처	000-200-5000(사) 000-000-0000(핸)
	(여행일정) <input type="radio"/> 수학여행 기간 : 2017. 5. 19.(화) ~ 5. 22.(금) <input type="radio"/> 제주도착 시간/장소 : 10:00 / 경주불국사 <input type="radio"/> 방문인원 : 총 211명(인솔자 10명, 학생 201명)			
점검요청 시 설	1. (숙박시설) ○○○ 리조트 - 연락처 :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2. (음식점) ○○리조트 내 식당 - 연락처 :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3. (음식점) ○○식당 - 연락처 :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시설물 안전점검 후 지적사항 보완 일정 등을 감안하여 수학여행 방문 50일 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신청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4 청소년단체 현황

청소년 단체 현황

(2023.1. 기준)

순	청소년단체	소관부처 (소관법령)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1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 (RCY)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02-3705-3705 (02-3705-3777)	rcy.redcross.or.kr
2	대한청소년총효단연맹	여성가족부 민법 제32조	043-221-2918 (043-221-2919)	www.chunghyo.or.kr
3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교육부 민법 제32조	02-2662-7360 (02-2662-7361)	www.mrakorea.or.kr
4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여성가족부 민법 제32조	02-723-6165 (02-723-6167)	www.paramita.or.kr
5	한국 4-H본부	농촌진흥청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02-428-0451 (02-428-0455)	www.korea4-h.or.kr
6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02-733-6801 (02-738-3013)	www.girlscout.or.kr
7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미래창조과학부 민법 제32조	02-739-6369 (02-722-6455)	www.yak.or.kr
8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여성가족부 민법 제32조	02-738-1501 (02-732-5843)	www.rotarykorea.org
9	한국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02-6335-2000 (02-6335-2020)	www.scout.or.kr
10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특허청 민법 제32조	02-569-7231 (02-569-7228)	www.kyic.org
11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여성가족부 민법 제32조	02-2663-4163 (02-2663-4177)	www.civo.net
12	한국청소년연맹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02-841-9291 (02-845-8138)	www.koya.or.kr
13	한국항공소년단	산업통상자원부 민법 제32조	02-953-7543 (02-953-7545)	www.yfk.or.kr
1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02-886-8522 (02-886-8521)	www.sekh.or.kr
15	기독교청소년협회(CYA)	전라북도 민법 제32조	063-272-7022 (063-271-7040)	www.cya21.org
16	성산청소년효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032-438-4293 (032-421-4783)	www.sungsan1318.or.kr
17	세계화교육문화재단	외교부 민법 제32조	02-312-3550 (02-392-3560)	www.globaleducation.or.kr
18	숲사랑소년단	산림청 민법 제32조	02-968-0868 (02-968-0818)	www.greencause.or.kr
19	한국YWCA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02-774-9702 (02-774-9724)	www.ywca.or.kr
20	흥사단	교육부 민법 제32조	02-743-2511 (02-743-2515)	www.yka.or.kr
21	청소년교화연합회	여성가족부 민법 제32조	02-733-5138 (02-722-6623)	www.yeba.or.kr
22	푸른나무 청예단	여성가족부 민법 제32조	02-585-0098 (02-585-0038)	www.jikim.net

III 안전한 체험학습 Q&A

1 숙박형 체험학습

Q

1

(체험학습 규모) 숙박형 체험학습의 실시 인원은 반드시 3학급 이하 또는 학생수 100명 미만으로만 실시해야 하나요?

숙박형 체험학습은 3학급 이하 또는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때는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여 기본 또는 세부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후 자율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4학급 이상 그리고 학생수 100명 이상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여 세부계획서와 함께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사전컨설팅을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대규모 수련활동은 서류 제출은 하되 학교에서 요청이 있거나 서류 검토 후 필요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2

(인솔자)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 학급당 인솔자가 반드시 2명이 필요한가요? 관리자도 인솔자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모든 체험학습의 경우 학급당 2명 또는 참여 학생 25명 기준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이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급당 또는 참여 학생 25명 당 인솔 교사 1명이 인솔할 수 있습니다. 이때 1명이 인솔하는 경우 반드시 교사가 인솔하여야 합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 관리자를 인솔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학교주관 체험학습이 아닌 경우 사업담당자 또는 전문경력관(지도사) 등도 인솔 가능

C3

Q

3

(활성화 위원회) 숙박형 체험학습인 경우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 같이 학년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는 모두 심의 대상이나 희망 학생 일부만 참여하는 숙박형 캠프, 숙박형 청소년단체 활동 등과 현장답사를 다녀온 1일형 체험학습의 경우는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록

Q

4

(안전교육) 학교장은 인솔자 및 지도교사에게 출발 전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해야 하는데 안전전문가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출발 전 안전교육을 위해 가급적 외부의 안전전문가(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한적십자사 체험학습 안전교육 담당 및 이수자, 인명구조협회, 소방서, 소방안전협회 등)를 확보해 연수하도록 권장하나 사정이 어려울 경우 안전요원 연수를 이수한 교원 등을 활용하여 자체 연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한 경우는 현장체험학습 담당자가 자체 연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Q

5

(안전교육) 체험학습을 실시 할 때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요?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은 의무사항이므로 체험학습 출발 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안전교육은 안전 연수를 받은 인솔자가 직접 실시하면 됩니다. 이때 다양한 안전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학습자료](#), 동영상, PPT자료 등 활용)

특히 체험학습 실시 지역의 특징, 이동수단, 일정에 따른 움직임의 동선에 따른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Q

6

(동의율)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숙박형 체험학습 동의율을 결정할 때 몇 %로 정해야 하나요?

체험학습 동의율은 전체 학년이 참석하는 경우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일부 학생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은 설정 대상이 아닙니다.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인 만큼 가급적 많은 학생이 참여하여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소수일지라도 그들을 위한 대체교육과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동학년에서 국외/국내로 분리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지양합니다.

Q

7

(여행자 보험) 숙박형 체험학습시 여행자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출발 전 안전교육을 위해 가급적 외부의 안전전문가(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한적십자사 체험학습 안전교육 담당 및 이수자, 인명구조협회, 소방서, 소방안전협회 등)를 확보해 연수하도록 권장하나 사정이 어려울 경우 안전요원 연수를 이수한 교원 등을 활용하여 자체 연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한 경우는 현장체험학습 담당자가 자체 연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Q

8

(동의율)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정한 동의율에 학부모 동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해야 하나요?

학부모 동의율 취합 결과 활성화위원회에서 정한 동의율에 미달될 경우 체험학습을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체험학습 계획서를 변경하고 활성화 위원회의 재협의를 거쳐 동의율을 다시 설정하여 추진할 수 도 있습니다.

Q

9

(적용 범위)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및 기타 학교교육과정에 운영 따른 학교 밖 체험활동이나 외부기관주체행사, 교육청주관행사, 외부기관협조행사, 체육활동, 영어캠프, 영재캠프, 과학캠프, 진로체험활동, 청소년단체 행사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은 모두 본 매뉴얼의 체험학습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은 도교육청 각 부서의 기본계획서의 안전 계획을 우선으로 적용하나 방침이 없을 경우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학교장의 책임하에 안전대책을 확보한 후 학교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합니다.

특히 별도의 계획이 시행되는 유치원, 특수학교(급), 체육교육(생존수영, 해외전지훈련 등) 관련 계획은 각 도교육청 부서의 자체 안전 계획 및 매뉴얼이 우선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03

부록

Q

10

(소규모 인정) 한 학년 150명이 50명내외 소규모로 3팀으로 나누어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겹치지 않고 이동수단도 각각 다릅니다. 다만 숙소를 같이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합니까? 이때 교육지원청의 컨설팅을 받아야 하나요?

불가피한 경우 대규모 인원의 숙소 이용은 컨설팅 없이 가능하지만, 단순 공동 숙박이 아닌 숙소에서의 대규모 활동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 컨설팅 대상입니다.

즉,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나 코스, 이동수단이 다르다 하더라도 숙소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소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시행에 따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숙소 계약의 어려움,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숙소만 함께 이용하는 경우는 숙소에서 대규모 인원이 되므로 안전요원의 배치, 대피로 확인 등의 사전 안전교육 등 알맞은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컨설팅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 공동 숙소의 이용이 아닌 숙소에서 단체 레크레이션 등 대규모 활동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 컨설팅 대상에 해당됩니다.

2 1일형 체험학습

Q

11

(대규모 운영) 1일형 체험학습의 경우 4학급 이상 그리고 100명 이상의 규모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규모에 따른 학생 안전 대책 수립 및 소규모 형태 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4학급 이상 그리고 100명 이상의 규모로도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Q

12

(활성화위원회) 1일형 현장체험학습인 경우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심의가 의무입니까?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심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1일형 현장체험학습 중 현장답사 생략할 경우 체험학습 안전대책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고위험 활동이 포함된 경우는 답사 생략 불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 같이 학년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와 현장답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만 심의 대상이며, 희망 학생 등 일부 학생이 참여하는 숙박형 캠프, 숙박형 청소년단체 활동 등과 현장 답사를 다녀온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는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심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단, 학교장이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함.

03

Q

13

(보험가입) 1일형 현장체험학습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일형 현장체험학습 중 고위험 활동(수영·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 등)은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나 그 외의 1일형 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록

Q

14

(인솔자)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인솔자를 1개 학급 또는 참여 학생 25명 기준으로 2명 이상 확보 운영해야 하나요?

모든 체험학습의 경우 학급당 2명 또는 참여 학생 25명(학급이 아닌 경우) 기준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함을 권장합니다. 인솔자는 학교 여건에 따라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인솔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급당(참여 학생 25명 당) 교사 1명이 인솔할 수 있습니다.

Q

15

(체험학습 시수 편성) 현장체험학습 운영으로 교육과정 수업시수와 미참가학생의 교육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나요?

현장체험학습 1일 수업 시수 편성은 학생들의 건강 및 학습효과 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운영 계획서에 사전 계획된 학습 시간 만큼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단, 체험학습 운영 계획서 수립 시 미참가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일 수업 시수를 편성하여야 합니다.

Q

16

(체험학습 시수 배정) 현장체험학습 운영시 이동시간을 제외한, 체험장소에서의 실제 활동시간 만큼만 교육과정 시수에 편성해야 하나요?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따른 소요시간에 맞게 편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의 행사(현장체험학습)의 특성에 맞춰 이동시간과 체험활동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교과 및 창의적체험 활동의 영역별 활동이 있을 경우 연계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Q

17

(대중교통 이용) 현장체험학습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나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경우는 출퇴근 시간 혼잡 등을 고려하여 다중 밀집상황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과 교통 안전 및 예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여행자보험가입을 권장합니다. 또한, 체험학습이후 학생의 귀가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타

Q

18

(계약) 사전에 구두계약(가계약)을 통해 특정 시설과 진행해도 됩니까?

체험학습의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써 단순히 시설이 깨끗하다는 이유로 특정 시설을 정해놓고 구두계약(가계약)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청렴도 제고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19

(학운위 심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 각종 견학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해도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중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3호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 제5호(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제6호(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Q

20

(청렴)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를 무료로 입장시키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고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설의 무료 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3

부록

Q

21

(전세버스) 사전의 배차계획에 따라 차량조회를 했으나, 출발 당일 다른 차량을 배차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운행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차량점검 및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배차된 차량번호판 등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차량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받아 차량조회를 하는 등의 사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Q

22

(학운위 심의) 학년초 학교 교육과정을 심의한 후 발생하는 교육과정 운영내의 각종 행사·활동·프로그램 등은 이미 심의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교육과정 운영내의 각종 행사, 활동, 프로그램 등은 학년초 학교 교육과정심의에서 대략적으로라도 심의하였다면, 다시 심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초중등 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6호의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나, 학년초 심의 당시에는 학부모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었는데, 뒤늦게 학부모의 부담이 필요하게 된 경우라면 제1항 제5호의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으로써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 구체적 계획 수립 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중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지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23

(인솔자) 학부모(또는 자원봉사자 등)를 인솔자로 할 경우 여행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교직원을 제외한 인솔자의 여행경비도 학교에서 업체로 일괄 송금해야 합니다. 단, 사전에 내부결재를 득하여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체험학습 계획서에 명예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 경비의 부담주체가 명확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비의 경우 필요한 차량 대수에 대해 계약한 후 전체 인원(인솔자 포함)으로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Q

24

(숙박시설) 소규모로 실시할 때 펜션, 민박 등을 이용한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한지요?

숙박시설에 대한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업체에서 제출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이용 시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최근 1년 이내) 후에 이용해야 합니다.

Q

25

(안전요원 연수) 안전요원 연수의 유효 기간은 있나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경우 교육(지원)청 주관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한 번 받고 추후 매학년도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외부 안전요원의 경우 국내여행안내사 등 기본 자격을 소지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를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Q

26

(국외 현장체험학습 답사 대리 실시) 내년에 처음으로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외라서 현장답사로 인한 출장비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여행사가 대신 답사해도 될까요?

처음 실시하는 경우 1회 이상의 답사를 다녀와서 실시해야 합니다. 출장비가 많이 들더라도 실제 학생 인솔 담당자가 체험학습 활동상의 체험지와 숙박장소의 안전상 위험요소와 동선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은 외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원과 학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년 같은 학교 간의 국제교류학습인 경우 또는 같은 체험 장소·숙박업소의 국외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현지 관계자를 통한 해당 학년도 안전관련 서류로 현장답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C3

부록

Q

27

(사안보고) 현장체험학습 운영 중 학생이 넘어져서 무릎을 긁히고 상처가 났는데 이것도 사안보고를 해야 하나요?

보고할 만한 사안인지 담당자가 판단하시되, 단순 찰과상은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원 진료 및 치료가 요구되는 인명사고나 집단 식중독 또는 2명이상의 감염병 등은 교육지원청으로 사안보고 해주셔야 합니다. 병원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고나 차량만 긁히는 등의 접촉사고 등은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28

(학교회계) 체험학습 경비를 학교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학생의 개인 통장으로 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합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의 근거에 따라 수익자 부담 수입을 학교회계 편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처리시에는 분실우려, 체험학습 후 정산 어려움, 연말 교육비 정산불가, 수익자부담금 공개방안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체험학습비는 학교회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e-DASAN현장지원(현장체험학습 수익자 부담 처리)〉

Q

29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을 체험학습비 또는 수련활동 경비 지원으로 편성해서 사용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2020.6)개정으로 학교 발전기금의 수익자 부담경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체험학습비 및 수련활동 경비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경기도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학교발전기금 관련 질의응답〉

Q

30

(전세버스) 학교에서 체험학습 전세버스 계약시 연식을 제한해도 되나요?

법령상 학교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2]에 따라 차령은 11년이며, 정기검사와 안전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차령 이내의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IV 각종 서식

- 〈서식 1〉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구성 현황(예시)
- 〈서식 2-1〉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형) 결과 설문(참가 학생용)
- 〈서식 2-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형) 결과 설문(인솔 교원용)
- 〈서식 3-1〉 수련활동형 결과 설문(참가 학생용)
- 〈서식 3-2〉 수련활동형 결과 설문(인솔 교원용)
- 〈서식 4〉 체험학습 불참자 환불 및 정산보고(예시)
- 〈서식 5〉 국외 현장체험학습 신고서
- 〈서식 6〉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서식 7〉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
- 〈서식 8〉 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서식 9〉 현장체험학습 사안 보고서
- 〈서식 10〉 숙박형 체험학습 수송버스 호송 협조(음주측정 등) 요청서
- 〈서식 11〉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신청서
- 〈서식 1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세부계획 목차(예시)

03

부록

서식 1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구성 현황(예시)

○○○학교장

구분	위원명	직위	학부모 위원		연락처	비고
			학생 명	학년 반		
1	위원장		교감			
2	부위원장		학부모			
3	위원					
4						
5						
6						
7						
8						
9						
10						
11						
총 원		명	학부모위원		명	%
			교원위원		명	%

서식 2-1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형) 결과 설문(참가 학생용)

영역 구분	내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5점	4점	3점	2점	1점
숙소	1) 숙소의 침구류와 화장실 등이 청결하게 관리되었는가?					
	2) 숙소 배정 시 한방의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되었는가?					
	3) 숙소의 냉방(난방)은 적절하게 제공되었는가?					
	4) 학생들이 숙박하기에 안전한가?					
	5) 후배들에게 이 숙소를 이용하도록 추천하고 싶은가?					
프로그램	6) 활동한 프로그램 내용이 흥미롭고 교육적이었는가?					
	7)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학습하는 내용과 관계있고, 체험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제학습에 도움이 되었는가?					
	8) 우리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프로그램 진행이 되었는가?					
	9) 체험프로그램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되어 충분한 경험이 되도록 진행되었는가?					
	10) 지도강사(문화해설사, 인솔강사 등)는 바른말을 사용하며 친절하게 지도하였는가?					
교통	11) 운전기사는 친절한 태도로 대하였는가?					
	12) 운전기사는 안전하게 운행하였는가? (과속·난폭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 무리지어 운전 금지)					
	13) 차량은 청결하며, 적정 온도를 유지하였는가?					
	14) 차량내 안전장비(안전벨트,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는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15) 이용한 교통수단은 만족스러운가?					
영양 및 식사	16) 식사의 양은 충분하였으며, 맛있었는가?					
	17) 식당은 청결하였는가?					
	18) 식사(밥, 반찬)는 맛있고 청결하게 요리되었는가?					
	19) 조리종사원은 친절했는가?					
	20) 이용한 식당을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가 ?					
소계						
- 만족도 총점(20문항×5점=100점) 중 조사학생의 점수) - 전체조사학생의 점수합계/조사학생수 = 만족도		합계 ()점				

서식 2-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형) 결과 설문(인솔 교원용)

영역 구분	내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5점	4점	3점	2점	1점
숙소	1) 숙소의 침구류와 화장실 등이 청결하게 관리되었는가?					
	2) 숙소 배정 시 한 방의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되었는가?					
	3) 숙소의 냉방(난방)은 적절하게 제공되었는가?					
	4) 학생들이 숙박하기에 안전한가?					
	5) 내년에도 이 숙소를 이용하도록 추천하고 싶은가?					
프로그램 및 내용	6) 활동한 프로그램 내용이 흥미롭고 교육적이었는가?					
	7) 프로그램이 교육과정과 연계되고 체험중심으로 진행되었는가?					
	8)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가?					
	9) 체험프로그램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되어 충분한 경험이 되도록 진행되었는가?					
	10) 지도강사(문화해설사, 인솔강사 등)는 바른말을 사용하며 친절하게 지도하였는가?					
교통	11) 운전기사는 친절한 태도로 대하였는가?					
	12) 운전기사는 안전하게 운행하였는가? (과속·난폭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 무리지어 운전 금지)					
	13) 차량은 청결하며, 적정 온도를 유지하였는가?					
	14) 안전벨트는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15) 이용한 교통수단은 만족스러운가?(기차, 버스, 선박 등)					
영양 및 식사	16) 식사의 양은 충분하였으며, 맛있었는가?					
	17) 식당은 청결하였는가?					
	18) 식사(밥, 반찬)는 맛있고 청결하게 요리되었는가?					
	19) 조리종사원은 친절했는가?					
	20) 이용한 식당을 내년에도 추천하고 싶은가?					
소계						
- 만족도 총점(20문항×5점=100점) 중 조사교원의 점수) - 전체조사교원의 점수합계/조사교원수 = 만족도					합계 ()점	

※ 인솔 교원 설문은 차기년도 학교자체 참고자료로 활용

서식 3-1 수련활동형 결과 설문(참가 학생용)

영역 구분	내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5점	4점	3점	2점	1점
시설 및 환경	1) 시설은 전체적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2) 환기, 채광, 조명, 방습, 방음 시설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다.					
	3) 화장실과 세면장 등은 깨끗하고 정돈이 잘 돼 있다.					
	4) 내년에도 본 수련원을 이용하고 싶다.					
숙소	5) 숙소의 청결상태에 대하여 만족한다.					
	6) 방 배정은 적당한 인원이 배치되었다.					
	7) 숙소의 냉방(난방)은 적당하다.					
	8) 베개 및 이불은 청결하고 잘 구비되어 있었다.					
프로그램	9) 활동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만족한다.					
	10) 프로그램은 교육과 놀이, 휴식 등이 적절히 편성되었다.					
	11) 후배가 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추천하고 싶다.					
안전 및 영양	12) 편성 인원과 수준에 따른 프로그램 난이도는 적당하였다.					
	13) 활동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았다.					
	14) 식사의 양은 충분하였다.					
	15) 식당은 청결하였으며 부식재료는 신선하고 맛있었다.					
교통	16) 운전기사는 친절하고 법규를 잘 지켰다.					
	17) 차량의 실내가 청결하고 안전안전 장비가 잘 설치되어 있었다.					
청소년 지도사	18) 강사들은 바른말을 사용하며 친절하게 지도하였다.					
	19) 강사들로부터 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기타	20) 활동내용이 보람 있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					
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총점($20\text{문항} \times 5\text{점} = 100\text{점}$)만점 중 조사학생의 점수) - 전체조사학생의 점수합계/조사학생수 = 만족도 		합계 ()점				

서식 3-2 수련활동형 결과 설문(인솔 교원용)

영역 구분	내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5점	4점	3점	2점	1점
시설 및 환경	1) 다른 시설과 비교하여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였다.					
	2) 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적당하다.					
	3) 시설물이 안전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다.					
	4) 다음에도 이 장소를 이용하도록 추천하고 싶다.					
교육의 필요성	5) 활동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6) 프로그램이 교육과정과 연계가 잘되었다.					
	7) 학생들의 인격수양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프로그램 및 내용	8) 전반적인 활동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만족한다.					
	9)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고려한 우수한 프로그램이었다.					
	10) 프로그램의 구성에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11) 편성 인원과 수준에 따른 난이도는 적당하였다.					
안전 및 영양	12)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과 대비가 잘되었다.					
	13) 안전에 필요한 장비와 지원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14) 식당의 규모는 충분하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15) 식사의 양은 충분하였다.					
	16) 식단의 부식 재료는 신선하고 품질이 우수하였다.					
청소년 지도사	17) 강사들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친절하게 지도하였다.					
	18) 강사들은 학생 통솔을 효율적으로 잘하고 적당한 인원이 배정되었다.					
	19) 강사들은 진행과정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육하였다.					
	20) 강사들의 학생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았다.					
소계						
- 만족도 총점(20문항×5점=100점 만점 중 조사교원의 점수) - 전체조사교원의 점수합계/조사교원수 = 만족도		합계 ()점				

※ 인솔 교원 설문은 차기년도 학교자체 참고자료로 활용

서식 4

20○○학년도 ○학년 체험활동 불참자 환불 및 정산보고(예시)

20○○학년도 ○학년 수련활동 불참자에 대하여 환불하고자 하며, 총 정산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행 사 명 : 20○○년도 ○학년 수련활동
2. 행사기간 : 20○○. 5.12(월) ~ 5.14(수) (2박3일)
3. 행사장소 : ○○수련원(경기도 ○○군)
4. 총 정산내역

수납 인원	1인단가	수입금액 (A)	환불액 (B)	지 급 명 세(C)	잔액 (D=A-B-C)
418	50,450	21,088,100	302,700 (6명)	○숙박비 $5,500 \times 2\text{박} \times 412\text{명} = 4,532,000$ ○식비 $3,100 \times 6\text{식} \times 412\text{명} = 7,663,200$ ○수련시설이용료 $4,000 \times 412\text{명} = 1,648,000$ ○간식(빵, 음료수, 옥수수 등) $3,000 \times 412\text{명} = 1,236,000$ ○입장료(○○공원) $500 \times 412\text{명} = 206,000$ ○교통비 $13,350 \times 412\text{명} = 5,500,200$ 계 20,785,400	0

5. 불참자 환불내역

번호	학년반	성명	보호자성명	금 액	보호자 계좌번호
1	○ - 3	○○○	○○○	50,450	
2	○ - 5	○○○	○○○	50,450	
3	○ - 5	○○○	○○○	50,450	
4	○ - 6	○○○	○○○	50,450	
5	○ - 7	○○○	○○○	50,450	
6	○ - 7	○○○	○○○	50,450	
합계				302,700	

※ 수익자부담경비는 집행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함

※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이어서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출하거나 학급회의를 통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중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으로 집행하도록 함

서식 5

국외 현장체험학습 신고서

학교명 :

학교 (전화 :

) 20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 (박 일)					
참가 대상	대상학년	대상 학생수	참가자수	불참 학생수	참가율	
담당자	인솔 총책임	실무 책임	회계 담당	인솔 교직원수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목적지 및 주요 경유지						
출발· 도착시간	○ 출발일시, 출발공항, 비행편명 : ○ 도착일시, 도착공항, 비행편명 :		주관 여행사	()여행사 ④		
숙박 계획	숙박 일	제 1일	제 2 일	제 3 일	제 4 일	비고
	업 소 명					
	소재지					
	전화번호					
	방 수					
	실당인원					
1인당 경비		교사경비 학교회계 반영여부	현장답사실시 여부			
숙박비						
식비						
기타(운임등)						

- ※ 소규모 분산 실시의 경우 행선지 별로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
- ※ '목적지 및 주요 경유지'에는 목적지뿐만 아니라 주요 경유지는 모두 기재
- ※ 실시 전 보고 서식(기본계획에 같이 포함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
- ※ 국외 체험학습 현장답사는 1회 이상 실제 인솔자를 중심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년 같은 학교간 교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 답사가 어려다고 판단된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여행사 관계자, 국외 교류학습 대상 학교 관계자 등의 현장답사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서식 6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학교, 20 년 월 일, 목적지(장소) :
- 점검(교육)자 : [계약 담당] 홍길동, [OO관광]김길동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적·부적합 / 실시여부)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적합/부적합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경찰 협조)	적합/부적합	
차량 외부	- [운전자에게 내용 확인]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적합/부적합	
	- 차량외부 회사명, 탑승학교 등 표시 여부	적합/부적합	
	- [운전자에게 내용 확인]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적합/부적합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적합/부적합	
	- 소화기 비치 여부	적합/부적합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적합/부적합	
	- 안전벨트 및 좌석의 정상 여부	적합/부적합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적합/부적합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실시/미실시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실시/미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실시/미실시	
기타			

03

부록

서식 7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

구분	점검 항목	확인
안전 관리	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상황 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및 점검을 하였는가?	
	② 비상 연락망, 비상 상황 대처 방안, 비상조치 매뉴얼 등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는가?	
	③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체계(비상조치 시스템, 비상 연락망 등)에 대해 서비스 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교육여부)	
	④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여행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였는가?	
	⑤ 운송 수단과 숙박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점검, 검사, 측정 등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 및 보관하고 있는가?	
긴급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① 차량이동 중 일반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② 식중독 · 도난 및 분실물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③ 숙박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 내 안전사고 및 화재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④ 그 외의 발생 가능한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출발지 관광버스 탑승 업무	① 관광버스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 안내 표지 및 해당계약건별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였는가?	
	② 전체 좌석의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조작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③ 차량에서 기름 냄새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였는가?	
	④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띠 착용과 비상시 대피방법 등 버스 내 안전 수칙을 설명하였는가?	
	⑤ 비상탈출용 망치, 소화기 등의 비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⑥ 전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여행지 이동 업무	① 운행 중 좌석을 이탈하지 않도록 안내 하였는가?	
	② 운행 중 음주가무를 하지 않도록 안내 하였는가?	
	③ 여행 휴게소 정차에 대하여 공지하였는가?	
	④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규정된 운행속도를 준수하도록 안내 하였는가?	
역 · 여객선 터미널 · 공항 도착 전 업무	① 여행업자의 로고나 업체명이 표기된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안내판을 이용하여 쉽게 여행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② 운송편, 탑승 시간, 탑승구, 출발 시간, 소요 시간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였는가?	
역 · 여객선 터미널 · 공항 도착 후 업무	① 객실 배정표(또는 탑승권)를 이용하여 출발 인원을 확인하였는가?	
	② 탑승권 발급 후 탑승구와 탑승 시간을 설명하였는가?	
	③ 탑승구로 안내하여 전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서식 8

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예시)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3년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 사업 예정 금액의 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하는 등 과도한 제한은 금지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 제안 업체 경영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의 재무 구조 - 신용평가 등급 	15	
기술 능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자료집 충실통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10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회사 여부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수련활동의 경우 : 청소년 지도사)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20 15 20	

서식 9

현장체험학습 사안 보고서

1. 수신인 :

2. 발신인 :

3. 보고 일시 : 년 월 일 시

4. 기본 사항 ※ 발생 즉시 유선보고 후, 현장체험학습 사안보고서 송부

학교명		전화번호	
체험학습 소재지			
사안 발생 일시		사안명	
사안 발생 교사 또는 학생 정보	〈사고 학생 수가 많을 경우 별도 자료 첨부〉		

5. 사안 개요

가. 사안 내용 (6하 원칙에 의해 기술)

나. 언론보도 내용 (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다. 경찰 조사 내용 (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6. 조치사항 및 향후 사안 수습 계획

서식 10

숙박형 체험학습 수송버스 호송 협조(음주측정 등) 요청서

○○학교장(직인)

- ※ 작성된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숙박형 체험학습만 신청)
- ※ 1일형 체험학습은 신청하지 않으며 1일형 체험학습의 경우 전세버스 업체의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받으며, 불가피한 경우 자체 음주감지기 등으로 측정함

연번	항목	실시내용			
1	기 간	20 년 0월 0일~ 0월 0일 [0박 0일]			
2	장 소	목적지 : ○○ 수련원 주 소 : ○○도 ○○시 ○○구 ○○동 ○○번지			
3	대 상	총 000명 (학생 000명, 인솔교사 00명), 버스 00대			
4	학 교 명 (담당 경찰서)	○○학교 (○○경찰서)			
	학교 주소 및 연락처	○○시 ○○구 ○○동 (☎ 031-000-0000)			
5	경기구간	(예시) 학교→외곽순환도로 부천IC→서울IC【15km】			
6	대표인솔자	성명 : ○○○ (휴대전화 000-000-0000)			
7	활동내역 및 이동코스				
실시일	출발 시각	출발지	이동 코스	도착 시각	비고
1일	08:00	○○학교	□□IC → 서해안고속 도로 → ○○IC → 목적지	12:00	학교 앞 교통정리, 운전자 안전교육, 음주측정 요청
2일			차량 이동 없음		
3일	13:00	○○수련원	역코스	15:30	

위와 같이 요청하오니 음주측정 및 가능한 범위에서 에스코트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서식 11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신청서

신청학교	(학교명)			
	(주 소)			
	업무 담당자		연락처	000-000-0000(사) 000-0000-0000(핸)
	(여행일정)			
<input type="radio"/> 수학여행 기간 : <input type="radio"/> 제주도착 시간/장소 : <input type="radio"/> 방문인원 : 총 명(인솔자 명, 학생 명)				
점검요청 시 설	1. (숙박시설) ○○○ 리조트 - 연락처 :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1(이도일동)			
	2. (음식점) ○○리조트 내 식당 - 연락처 :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1(이도일동)			
	3. (음식점) ○○식당 - 연락처 :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1(이도일동)			
협조사항	시설물 안전점검 후 지적사항 보완 일정 등을 감안하여 수학여행 방문 50일 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신청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 학 교 장

서식 12

2000학년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세부계획 목차(예시)

1. 목적
2. 기본방침
3. 운영 개요
4. 참가 학생 현황
5. 불참학생 지도 계획
6. 수학여행 코스 및 일정
7. 프로그램별 경비 산출내역
8. 저소득층 학생 경비 지원 계획
9. 현장체험학습 이동 수단 및 승차 계획
10. 현장체험학습 숙소 배치 및 객실 배정
11. 식단표 안내(식품 알레르기 표시)
12. 인솔교사 담당 업무
13. 요양호 학생 명단
14. 학생 준비물
15. 학생 및 인솔교사 사전안전교육 계획
16. 사전안전교육 내용 및 지도 계획
17. 사전 점검 내용 및 지도 내용
18. 수학여행 사후 활동 계획
19. 비상 연락망
20.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대응 체계

03

부록

2024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지도 · 자문

홍정표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국장

조영민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

최선하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관

기획위원

정연진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사

문현선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사

박현진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주무관

집필 · 편집

한도연 | 낙민초등학교 교장

김영인 | 백석고등학교 교장

김경희 | 둔대초등학교 교감

심태진 | 문산고등학교 교감

정우조 | 금정초등학교 교감

김영 | 교문중학교 행정실장

김현정 | 위례중앙중학교 교사

김정은 | 동두천초등학교 교장

이병달 | 안전교육관 교수부장

박정우 | 와부고등학교 교감

이은경 | 군서초등학교 교감

조효남 | 부용고등학교 행정실장

김도휘 | 송라중학교 교사

구은지 | 양평초등학교 교사

발행일 | 2024년 2월

발행처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금오동)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제작처 | 세창디자인 (1544-1466)

※ 매뉴얼의 세부 내용은 소속 지역의 교육지원청 체험학습안전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